

백서 [V]

사법농단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T/F

- 10. 사법농단 관련 특별법 법안
- 11. 사법농단의 기록 [민주변론 기고]



발 간 사

2018년 10월 27일 새벽 2시경, 서울중앙지방법원 임민성 판사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 대한 구속 영장을 발부하였다. 2017년 3월 초순경 언론이 이탄희 판사의 법원행정처 겸임해제 사건을 보도하자 당시 양승태 대법원장은 1차 진상조사단을 구성하여 조사를 시작하였다. 그러나 사법농단의 몸통인 양승태 대법원장이 현직에 있는 상황에서 진상조사단은 실질적인 조사는 하지도 않고 조사 시늉만 하였다. 2017년 9월 김명수 대법원장이 취임하면서 그해 11월에 대법원은 추가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였다. 추가 진상조사위원회는 구성원에서 진일보한 면이 없지 않았으나 당시 김소영 법원행정처장은 진상조사위원회의 조사를 방해하였고 이로 인하여 진상조사위원회는 관련 자료의 입수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대법원은 2018년 2월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을 구성하였고 그해 5월 25일 그 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이른바 대법원 3차 진상조사위원회라고 하는 위 특별조사단의 조사와 그 결과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는 상당했다. 그러나 이후의 과정은 국민들의 실망과 한탄과 우려만을 낳았다. 특별조사단이 그 조사내용을 공개하는데 지난한 과정을 거쳐야 했고 국민들은 대법원이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약속을 믿었으나 대법원은 결국 수사에 협조하지 않았다.

민변은 2018년 5월 25일 위 특별조사단의 조사결과 발표가 있는 직후에 50여 명의 회원들로 '사법농단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T/F'를 구성하였다. T/F는 먼저 사법농단 관련 전체 사건들에 대하여 법률적인 분석과 해설을 한 '이슈리포트'를 자세하게 작성하여 배포하였다. 이슈리포트는 언론에 배포하는 용도였지만 검찰에서 수사를 하면서 참고하기를 바랐다. 실제로 수사과정에서 이슈리포트가 상당히 도움이 되었다는 수사기관의 전언이 있었다.

사법농단 수사의 1차적인 어려움은 압수수색 영장의 기각이었다. 수사 단초로서의 압수수색 영장이 번번이 무더기로 기각되면서 통상 90% 이상의 압수수색 영장 발부율이 사법농단 수사에서는 발부율이 10% 미만이었다. 10%의 영장발부율도 그나마 '사법행정왜곡' 사건에 대하여 발부된 것이고 '재판관여' 사건에 관하여는 실질적인 발부율은 1% 정도였다.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대법원장의 약속은 영장전담판사들이 전면에서 수사를 방해하는 형국이 되었다. 심지어 유해용 변호사의 경우 대법원에서 무단으로 반출한 자료들을 폐기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작성해주고도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되자마자 즉시 폐기처분하였고, 사법농단 관련 판사들은 가장 중요한 증거물인 휴대폰을 파괴하거나 폐기처분하였다. 법원의 전, 현직 판사들은 한몫이 되어 사실을 은폐하고 증거를 폐기하고 각종 영장을 기각하면서 국민을 기만하였다.

이에 T/F에서는 민변 역사상 최초로 1인 시위를 결정하였다. 민변은 2018년 8월 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정문과 동문에서 1인 시위를 시작하여 10월 31일까지 출근시간과 점심시간에 1인 시위를 지속적으로 이어갔다. 변호사들에게 1인 시위는 그리 친숙하지 않았다. 경험을 해본 변호사들도 있었지만 상당수 변호사들

은 1인 시위를 처음으로 하였다. 더욱이 그 장소가 일상 재판을 하러 다니는 법원이었으므로 마음이 불편 하기도 하였으나 오히려 음으로 양으로 이를 격려해주는 판사들이 다수 있었으므로 많은 위로가 되었다. 민변 사상 처음으로 연인원 100명이 넘는 변호사들이 1인 시위에 동참하였다. 지부에서도 독자적으로 1인 시위를 하였다. 민변 회원들이 사법농단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피해자를 구제해야 한다는 굳센 의지로 1인 시위를 이어가던 와중에 드디어 임종현이 구속되었다. 임종현은 원세훈 댓글공작 사건, 일제 강제징용 손해배상 사건, 전교조 범의노조 사건, 통합진보당 국회의원 및 지방의원 사건 등 사법농단의 핵심적 지위에 있었기에 그의 구속은 더욱 중요한 의미가 부여되었다. 2019년 1월 24일 새벽 명재권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였다.

판사들은 엘리트 집단으로 통칭된다. 늦은 밤까지 서초동의 거대한 법원 건물은 불빛이 꺼질 줄을 모른다. 판사들은 그 불빛을 정의의 나침반으로 생각하고, 그것을 자랑으로 여기고 또한 자부심을 느꼈을 터다. 1990년대 중반부터 법조비리의 대책으로 법원은 판사들과 변호사들을 포함한 일반인과 사이에 장벽을 치기 시작하였다. 변호사가 판사를 방문할 때에는 방문대장에 기록하는 것에서 시작하여 다음에는 허가를 받으라고 하였고 이윽고 유리문으로 막아버렸다. 유리장벽이 변호사와 판사들 사이의 비리를 막는 장치라고 한다면 판사들은 다른 방법으로 국민과의 소통을 더욱더 지속하려고 노력했어야 한다. 상고법원의 방안은 국민과의 소통을 통하여 올바른 방법인지를 검증하는 과정을 거치고 실행 방법도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법농단 관련자들은 자신들이 만든 방안만을 절대시하였고 심지어 이를 위하여 국가권력에 아부하고 재판을 거래의 대상으로 삼았던 것이다.

사법농단의 매듭은 관련자들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수사로부터 풀어야 한다. 판사들은 수사를 하는 검찰의 문제를 지적하면서 누가 감히 누구를 수사하느냐는 반발을 하였다. 검찰이 순수하고 결점이 없어서 수사를 담당하는 것이 아니었다. 검찰의 문제는 검찰개혁의 방법으로 풀어야 한다. 사법농단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는 엄격하게 이루어져야 했다. 법원은 통상 90%를 상회하는 압수수색영장 발부율을 보여왔다. 법원은 압수수색에 있어서 피의사실 '관련성'의 개념을, ① 압수수색시점 시점으로, ② 수사기관의 관점에서, ③ 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을 그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로 환원하여 기본적 사실관계에 있어서 동일성이 인정되거나 동종 유사의 범행과 관련된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④ 사실인정의 자료로서, ⑤ 의미가 있을 수 있는가에 대한 물음에 대해 전혀 가능성이 없는 것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는 것이라면, 해당 사건과의 관련성이 있다고 하여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하여 왔다. 그것이 사후적으로 전혀 압수수색의 계기가 된 사건의 증거로 사용될 수 없음이 밝혀졌다고 하더라도 압수수색 과정에 아무런 위법이 없으므로 이를 위법수집증거로 볼 수 없는 것이고, 다만 환부 내지 폐기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법원은 오직 사법농단 사건 관련하여만 '피의사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 혹은 '압수대상 물건이 존재할 개연성이 없다'는 사유로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하였다. 법원은 적어도 법원과 관계가 있다고 의심되는 사건에서만은 최소한의 기본을 지켜야 했다. 법원 판결의 정당성은 헌법이 법원에 사법권을 부여하였다는 사실 자체로부터 당연히 도출되는 것이 아니고 법원 판단의 독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믿음에 기초하는 것

이다. 국민의 신뢰는 사법부 존립의 근거가 되는 반면 이러한 국민의 믿음과 신뢰를 얻는 것은 그들의 의무이다. 법원이 주권자인 국민에 의하여 선출되지 아니하여 직접적인 민주적 정당성을 갖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판결에 정치적 책임을 지지 않는 불가침의 독립성을 헌법이 보장하는 이유는 법에 의한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때문이다.

현재 법원은 사법농단 관련자들에 대하여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데 주요 특징은 이들에게 대부분 무죄를 선고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재판 결과는 사법농단 수사의 초기단계에서부터 예견하였던 바이다. 민변은 이러한 예견에 근거하여 특별재판부에서의 재판을 요구해왔다. 다시 특별재판부 구성에 대한 주장이 설득력을 가지게 되는 국면이다.

민변은 또한 사법농단 관련자들에 대한 탄핵을 요구하였다. 2021년 2월 4일 국회는 임성근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가결하였다. 사법농단 판사들은 법관징계법상 최고 수위의 처분이 정직 1년에 불과해 설령 징계절차를 통해 최고 정직 1년의 처분을 받더라도 이들이 언제든지 재판업무로 복귀할 수 있다. 이들에 대하여는 일시적인 재판업무 배제에 그칠 것이 아니라, 파면을 통해 영구적인 재판업무 배제 조치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아직 피해자들의 구제까지 험난하고 기나긴 여정이 남아 있다. 피해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제정 등 적절한 방식을 통해 사법농단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구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현재 법원은 사법농단 관련자들에 대한 재판을 진행하고 있으나 대부분 무죄를 선고하고 있는 상황이다. 민변은 혼신의 노력으로 사법농단에 대한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고 사법농단 관련자들에 대한 단죄의 내용과 방법을 제시하였으나 결국은 법원 스스로 거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변을 비롯한 사법개혁을 열망하는 모든 분들은 사법개혁의 소망을 계속 이어가기를 바라고 있다.

이 백서가 사법개혁이 완수될 수 있도록 소중하게 사용되었으면 한다.

2021. 5. 10.

사법농단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T/F 단장
변호사 천 낙 봉

목 차

| | |
|-----------------------------------|-------------|
| 1. T/F 구성현황 | 백서 [I] |
| 2. 사법농단 일지 | 백서 [I] |
| 3. T/F 회의 일지 | 백서 [I] |
| 4. 법원 조사보고서 | 백서 [I] |
| 5. 사법농단 관련 문건 | 백서 [II] |
| 6. 공동고발장 | 백서 [III] |
| 7. 이슈페이퍼 | 백서 [III] |
| 8. UN 법관과 변호사 독립 특별보고관 긴급청원 | 백서 [III] |
| 9. 사법농단 관여 법관 시민사회 탄핵소추안 | 백서 [IV] |
| 10. 사법농단 관련 특별법 법안 | 백서 [V] |
| 11. 사법농단의 기록 [민주변론 기고] | 백서 [V] |
| 12. 사법농단 관련 토론회 등 자료집 | 백서 [VI] |
| 13. 성명, 논평 등 | 백서 [VII] |
| 14. 사법농단 관여 법관 형사 판결문 | 백서 [VIII] |
| 15. 법관 임성근에 대한 탄핵소추안 | 백서 [IX] |

10

사법농단 관련
특별법 법안

사법농단 관련 특별법 법안

□ 개요

- 사법농단 사태의 해결을 위해서는 진상규명 뿐만 아니라 책임자에 대한 문책, 피해 회복이 절실히 요구됨.
- 사법농단 사태 이후, 사법농단 관여 법관의 형사 재판이 자칫 법원 내의 “제 식구 감싸기”식 결론에 이를 것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었음.
- 나아가 사법농단에 의한 피해자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온전히 행사할 수 있도록, 사법농단 관련 사건의 재심을 입법적으로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 또한 발생하였음.
- 이에 사법농단 T/F는 국회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관련 법안의 성안을 주도하였고, 그 결과 2018. 8. 14.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기간 중의 사법농단 의혹사건 재판을 위한 특별형사절차에 관한 법률” 및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기간 중의 사법농단 의혹사건 피해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안”이 각 발의되었음(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국회의원)
- 구체적인 법안의 내용은 이하와 같음.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기간 중의 사법농단 의혹사건
재판을 위한 특별형사절차에 관한 법률안
(박주민의원 대표발의)

| | |
|----------|-------|
| 의안 번호 | 14890 |
|----------|-------|

발의연월일 : 2018. 8. 14.

발 의 자 : 박주민 · 서영교 · 정재호
김철민 · 소병훈 · 김병욱
고용진 · 우원식 · 신창현
이후삼 · 김경협 · 백혜련
홍익표 · 권칠승 · 제윤경
추혜선 · 김정우 · 이춘석
정동영 · 김영호 · 김현권
서형수 · 윤후덕 · 김민기
박범계 · 최재성 · 박재호
전재수 · 오영훈 · 김종민
송기현 · 송갑석 · 유승희
윤준호 · 유은혜 · 신경민
서삼석 · 이재정 · 전현희
송옥주 · 손혜원 · 박홍근
심상정 · 오세세 · 강병원
정춘숙 · 강훈식 · 김병기
김종회 · 이용득 · 이학영
안민석 · 민병두 · 노웅래
인재근 · 김두관 의원
(56인)

제안이유

양승태 전 대법원장 체제하에서의 대법원이 상고법원 설치 등 특정 목적을 관철시키기 위해 청와대 등 외부 권력기관과 재판거래를 하려 했다는 의혹이 드러났음.

현재 이와 관련하여 검찰의 수사가 진행 중이나, 압수수색 영장 청구가 줄줄이 기각되는 등 법원의 제 식구 감싸기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음.

이에 별도의 절차를 통하여 영장발부를 담당할 전담 법관을 선정하고, 심리를 담당할 재판부를 구성하며, 관련 사건을 국민참여재판 대상으로 둬으로써, 양승태 전 대법원장 체제하에서의 재판거래 의혹 등 사건에 관하여 공정하고 국민의 신뢰를 높일 수 있는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시절 법원행정처를 중심으로 한 사법농단 의혹사건과 관련하여 재판의 공정성 확보 및 재판의 민주적 정당성과 신뢰를 높이기 위한 형사절차의 특례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조).

나. 이 법의 적용 대상사건은 법원 내 국제인권법연구회 모임 동향 파악 및 개입 등에 관한 사건 등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건 및 그

와 관련된 사건임(안 제3조).

다. 담당 법관이 대상사건의 전심재판 등에 관여한 때에는 그 직무집행에서 제척됨(안 제4조).

라. 수사단계에서 압수·수색 등 영장의 청구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하고, 그 심사를 위하여 특별영장전담법관을 임명함(안 제6조 및 제7조).

마. 제1심 재판을 위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판사 3명으로 구성된 특별재판부를 두고, 특별재판부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에 따라 대법원장이 임명함(안 제8조).

바. 제1심 재판은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민참여재판으로 함(안 제10조).

사. 특별재판부의 판결문에는 합의에 관여한 모든 판사의 의견을 표시하도록 함(안 제11조).

아. 대상사건의 재판은 다른 재판에 우선하여 신속히 하여야 하며, 그 판결의 선고는 공소제기일부터 3개월, 제1심 판결선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하도록 함(안 제13조 및 제17조).

자. 항소심 재판을 위하여 서울고등법원에 판사 3명으로 구성된 특별재판부를 두고, 특별재판부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에 따라 대법원장이 임명함(안 제15조).

차. 특별영장전담법관 후보자 및 특별재판부를 구성할 판사의 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대한변호사협회가 추천한 3명 등 9명의 위원으

로 구성하는 특별재판부후보추천위원회를 대법원에 설치함(안 제19조).

카. 개인·법인 등은 추천위원회 위원장에게 특별영장전담법관 후보자 및 특별재판부후보자로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추천하거나 특별영장전담법관 후보자 및 특별재판부후보자 추천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음(안 제24조).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기간 중의 사법농단 의혹사건 재판을 위한 특별형사절차에 관한 법률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시절 법원행정처를 중심으로 사법행정권 등을 남용하여 재판에 개입하려고 한 의혹, 재판을 거래대상으로 삼으려고 한 의혹, 판사 및 판사 모임에 대하여 사찰하고 개입하려고 한 의혹, 외부 단체에 대하여 사찰하고 개입하려고 한 의혹 등 사법농단 의혹사건과 관련하여 재판의 공정성을 확보함은 물론 재판의 민주적 정당성과 신뢰를 높이기 위하여 형사절차의 특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민참여재판”이란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배심원이 참여하는 형사재판을 말한다.
2.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회의”란 「법원조직법」 제9조의2에 따른 사법행정에 관한 자문기관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설치된 판사회의를 말한다.
3. “서울고등법원 판사회의”란 「법원조직법」 제9조의2에 따른 사법행정에 관한 자문기관으로서 서울고등법원에 설치된 판사회의를

말한다.

제3조(대상사건) 이 법의 적용대상은 다음 각 호의 사건 및 그와 관련된 사건(이하 “대상사건”이라 한다)에 한정한다.

1. 법원 내 국제인권법연구회 모임 동향 파악 및 개입에 관한 사건
2. 국제인권법연구회 주관 공동학술대회 준비과정 개입에 관한 사건
3. 사법행정위원회 위원 후보 성향 분석 및 추천 개입에 관한 사건
4. 상고법원 도입을 반대하는 법관 사찰에 관한 사건
5. 다음 카페 ‘이판사판야단법석’ 사찰 및 폐쇄 유도에 관한 사건
6. 서울중앙지방법원 단독판사회의 의장선거 개입에 관한 사건
7. 청와대 등 외부기관과의 재판거래 의혹과 관련된 대법원장, 대법관 및 판사 등에 관한 사건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건에 관한 수사과정에서 범죄사실이 발견되어 기소된 관련 사건

제4조(법관의 제척) 대상사건을 담당하는 법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직무집행에서 제척된다.

1. 대상사건의 전심재판 또는 그 기초되는 조사·심리에 관여한 때
2. 대상사건 피고인과 같은 재판부에 있었을 때
3. 대상사건에 관한 보고에 관여하거나 보고서 삭제에 관여한 때
4.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기간 중 법원행정처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때
5.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임명을 제청한 대법관인 경우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대상사건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법원조직법」, 「형사소송법」 및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장 제1심

제1절 압수·수색·검증·체포 및 구속

제6조(전속관할) 수사단계에서 대상사건과 관련한 압수·수색·검증·체포 또는 구속영장의 청구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

제7조(특별영장전담법관의 임명) 대법원장은 수사단계에서 대상사건에 관한 압수·수색·검증·체포 또는 구속영장의 청구에 대한 심사를 전담할 법관(이하 “특별영장전담법관”이라 한다) 1명 이상을 제19조에 따른 특별재판부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에 따라 임명한다.

제2절 공판

제8조(특별재판부의 설치 및 구성) ① 대상사건의 제1심 재판을 위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1개 이상의 특별재판부를 둔다. 특별재판부는 대상사건의 제1심 심리기간 동안 대상사건 심리만을 전담한다.

② 특별재판부는 판사 3명으로 구성하고 그 중 1명이 재판장이 되며, 재판장과 특별재판부 판사는 대법원장이 제19조에 따른 특별재

판부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에 따라 임명한다.

제9조(재판관할) 대상사건의 제1심 재판은 서울중앙지방법원 특별재판부의 전속관할로 한다.

제10조(국민참여재판) ① 대상사건의 제1심 재판은 국민참여재판으로 한다.

② 대상사건에 관하여는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6조, 제8조, 제9조, 제11조 및 제36조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1조(특별재판부의 의사표시) 특별재판부의 판결문에는 합의에 관여한 모든 판사의 의견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12조(재판의 중계 목적 녹음·녹화·촬영) 특별재판부는 대상사건의 공판 또는 변론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재판과정 기록 및 중계를 목적으로 한 녹음·녹화·촬영을 허가하여야 한다.

제13조(재판기간) 대상사건의 재판은 다른 재판에 우선하여 신속히 하여야 하며, 그 판결의 선고는 공소제기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14조(사건의 대국민보고) 법원은 대상사건에 대하여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하여 재판과정에 관한 언론브리핑을 실시할 수 있다.

제3장 항소심

제15조(특별재판부의 설치 및 구성) ① 대상사건의 항소심 재판을 위하여 서울고등법원에 특별재판부를 둔다. 특별재판부는 대상사건의 항소심 심리기간 동안 대상사건 심리만을 전담한다.

② 특별재판부는 판사 3명으로 구성하고 그 중 1명이 재판장이 되며, 재판장과 특별재판부 판사는 대법원장이 제19조에 따른 특별재판부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에 따라 임명한다.

제16조(재판관할) 대상사건의 항소심 재판은 서울고등법원 특별재판부의 전속관할로 한다.

제17조(재판기간) 대상사건의 재판은 다른 재판에 우선하여 신속히 하여야 하며, 그 판결의 선고는 제1심 판결선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18조(준용규정) 제11조, 제12조 및 제14조는 항소심에 준용한다.

제4장 특별재판부후보추천위원회

제19조(특별재판부후보추천위원회) ① 특별영장전담법관 후보자 및 특별재판부를 구성할 판사의 후보자(이하 “특별재판부후보자”라 한다)를 추천하기 위하여 대법원에 특별재판부후보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추천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법원장이 위촉한다.

1. 대한변호사협회가 추천한 3명
2. 「법원조직법」 제9조의2에 따른 해당 법원 판사회의에서 추천한 3명
3. 학식과 덕망이 있고 각계 전문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변호사 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 3명. 이 경우 1명 이상은 여성이어야 한다.

- ④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⑤ 추천위원회는 2명의 특별영장전담법관 후보자 및 특별재판부를 구성할 판사의 2배수의 특별재판부후보자를 추천하여야 한다.
- ⑥ 추천위원회는 제1심은 대상사건이 기소된 날부터, 제2심은 제1심 판결선고에 대해 항소한 날부터 2주 이내에 특별재판부후보자를 추천한다.
- ⑦ 특별영장전담법관 후보자는 서울중앙지방법원 특별재판부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한 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다.
- ⑧ 대법원장은 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날부터 1주일 이내에 추천을 받은 사람 중에서 특별영장전담법관 및 특별재판부를 구성할 각 3명의 판사를 임명한다.
-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추천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추천위원회 운영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20조(판사회의) ① 특별영장전담법관 후보자 및 서울중앙지방법원 특별재판부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한 추천위원회의 위원 3명은 서울

중앙지방법원 판사회의에서 추천하고, 서울고등법원 특별재판부 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한 추천위원회의 위원 3명은 서울고등법원의 판사회의에서 추천한다.

② 제1항의 추천은 판사회의의 결정에 따라 그 일부 구성원으로 구성되는 내부판사회의에서 결정할 수 있다.

제21조(추천위원회 위원의 제척) ① 추천위원회 위원은 자기 또는 자기의 친족이 당사자가 되거나 해당 안건의 심사·의결에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심사·의결에서 제척된다.

② 추천위원회는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결로 해당 위원의 제척 결정을 하여야 한다.

제22조(추천위원회의 회의) ① 추천위원회는 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추천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및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23조(비밀누설의 금지) 위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추천위원회의 심사사항 등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4조(특별재판부후보자의 추천 등) ① 개인·법인 또는 단체는 추천위원회 위원장에게 서면으로 특별영장전담법관 후보자 및 특별재판부후보자로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추천하거나 그 밖에 특별영장전담법관 후보자 및 특별재판부후보자 추천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추천은 추천된 사람의 학력, 경력 등 주요 인적사항 및 추천사유 등을 명시하여 비공개로 하여야 한다.

③ 추천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추천받은 사람 가운데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적격 여부를 심사한 후 적격으로 판정된 사람을 특별영장전담법관 후보자 및 특별재판부후보자로 추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법은 대상사건에 대한 모든 판결이 확정되는 날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기간 중의 사법농단 의혹사건
피해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안
(박주민의원 대표발의)

| | |
|----------|-------|
| 의안 번호 | 14894 |
|----------|-------|

발의연월일 : 2018. 8. 14.

발 의 자 : 박주민 · 서영교 · 정재호
김철민 · 소병훈 · 김병욱
고용진 · 장병완 · 신창현
우원식 · 이후삼 · 김경협
백혜련 · 홍익표 · 권칠승
제윤경 · 추혜선 · 김정우
이춘석 · 정동영 · 김영호
김현권 · 서형수 · 윤후덕
김민기 · 박범계 · 최재성
박재호 · 전재수 · 오영훈
김종민 · 송기현 · 송갑석
유승희 · 윤준호 · 유은혜
신경민 · 서삼석 · 이재정
전현희 · 송옥주 · 손혜원
박홍근 · 심상정 · 오제세
강병원 · 정춘숙 · 강훈식
김병기 · 김종희 · 이용득
이학영 · 안민석 · 민병두
노웅래 · 인재근 · 김두관
의원(57인)

제안이유

양승태 전 대법원장 체제하에서의 대법원이 상고법원 설치 등 특정 목적을 관철시키기 위해 청와대 등 외부 권력기관과 재판거래를 하려 했다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음. 이에 법관이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재판할 것을 신뢰하고 재판을 청구한 사건 당사자들로서는 재판의 공정성을 신뢰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음.

사법부 스스로가 사법부의 독립과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훼손한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 만큼, 사안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사건 당사자에 대한 신속하고 확실한 피해구제조치가 이뤄져야 할 것임.

따라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기간 중 법원행정처가 작성한 문건에서 특정 재판이 ‘청와대와의 협력 사례’로 명시되는 등 재판의 공정성이 침해된 사건의 경우 재심의 사유가 있는 것으로 봄. 또한, 사법농단 피해구제위원회를 설치하여, 사건 당사자들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결정을 하도록 함.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기간 법원행정처를 중심으로 사법행정권 등을 남용하여 재판에 개입하려고 하거나 재판을 거래대상으로 삼으려고 한 의혹이 있는 사건에 관하여 공정성이 침해된 사건 당사자의 피해를 구제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사법농단피해자가 당사자인 사건 중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사유의 특례를 마련하고, 민사 재심 청구는 이 법 시행일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할 수 있으며, 판결 확정 후 10년이 지나면 제기하지 못하도록 재심기간의 특례를 두고, 재심의 소에서 청구인 및 상대방의 소송비용은 전부를 면제하거나 국고에서 부담하도록 하고, 당사자의 신청이 있을 경우 법원이 필요적으로 소송구조결정을 하게 하는 등 특례를 규정함(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

다. 사법농단피해자에 대한 피해 구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에 대한 권고 등 피해구제조치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국무총리 소속의 사법농단 피해구제위원회(이하 “피해구제위원회”라 한다)를 둠(안 제7조 및 제9조).

라. 피해구제위원회는 피해구제조치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데에 필요한 사실 등을 조사할 수 있으며, 피해구제조치를 받으려는 신청인은 심의 절차에서 피해구제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및 제12조).

마. 신청인은 피해구제위원회가 구성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피해구제신청을 하고, 피해구제위원회는 120일 이내(30일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 가능)에 피해구제결정 또는 기각 결정을 하도록 함(안 제11조 및 제13조).

바. 피해구제위원회는 피해자의 피해를 구제하고 명예를 회복하기 위

한 조치를 국가기관 등에 권고할 수 있으며, 권고를 받은 국가기관 등은 권고사항을 존중하고 이행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함(안 제14조 및 제19조).

사. 피해구제위원회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신청인은 결정서정보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피해구제위원회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

아. 피해구제위원회는 피해자의 피해를 구제하고 명예를 회복하기 위하여 사건 당사자 및 이해관계인에 대하여 조정안을 권고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

자. 사법농단피해자의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하여 국가는 소멸시효 완성의 항변을 할 수 없도록 함(안 제18조).

차. 피해구제위원회 위원·직원 등에 비밀준수 의무를 부과하고, 자격사칭 등을 금지하며,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기간 중의 사법농단 의혹사건 피해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대법원장 재임기간 중 법원행정처가 중심이 되어 사법행정권을 남용하여 재판에 개입하거나 재판을 거래대상으로 삼은 의혹이 있는 사건에 관하여 공정성이 침해된 사건 당사자의 피해를 구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법농단피해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의 당사자를 말한다.

가. 대법원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이하 “특별조사단”이라 한다)이 2018년 5월 25일 발표한 조사보고서에서 정부 운영에 대한 사법부의 협력 사례로 기재된 재판사건

나.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대법원장 재임기간 중 법원행정처가 작성한 ‘정부 운영에 대한 사법부의 협력 사례’ 문건에서 협력 사례로 기재된 재판사건

다. 그 밖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대법원장 재임기간 중 법원행정처가 작성한 문건에서 국가기관에 대한 사법부의 협력 사례

로 기재되거나 그에 준하는 재판 개입 또는 거래 대상으로 의심되는 내용이 기재된 재판사건

2. “공공기관”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서 정한 공공기관을 말한다.

제2장 재심에 관한 특례

제3조(재심사유에 관한 특례) 제2조제1호 각 목에 따른 사건 중 확정 판결에 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451조제1항 및 제2항, 「형사소송법」 제420조에도 불구하고 재심사유가 있는 것으로 본다.

제4조(재심기간에 관한 특례) ① 「민사소송법」 제456조에도 불구하고 제3조에 따른 재심사유로 인한 민사 재심 청구는 이 법이 시행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할 수 있다. 다만, 이 법 시행 후에 제3조에 따른 재심사유가 발견된 경우에는 재심의 사유를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심의 소는 판결이 확정된 후 10년이 지나면 제기하지 못한다.

제5조(소송비용에 관한 특례) ① 「민사소송법」 제98조부터 제116조 까지에도 불구하고 제3조에 따른 재심사유로 인한 재심의 소에서 청구인 및 상대방의 소송비용은 전부를 면제하거나 국고에서 부담한다.

② 사법농단피해자는 제1항의 재심의 소에서 법원에 소송구조 신청을 할 수 있고, 법원은 위 신청이 있는 경우 소송구조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소송구조 결정에 의하여 사법농단피해자가 소송구조를 받을 경우, 소송구조 변호사에게 지급할 기본보수액은 당해 사건의 심급마다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④ 소송구조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사소송법」 제128조부터 제133조까지를 준용한다.

제6조(준용) 재심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사소송법」(제451조 및 제456조를 제외한다) 또는 「형사소송법」(제420조를 제외한다)을 준용한다.

제3장 사법농단 피해구제위원회

제7조(사법농단 피해구제위원회 설치 및 구성 등) ① 사법농단피해자에 대한 구제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사법농단 피해구제위원회(이하 “피해구제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피해구제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국무총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판사·검사·군법무관 또는 변호사의 직에 10년 이상 재직한 사람
2. 대학에서 교수·부교수 또는 조교수의 직에 10년 이상 재직한 사람
3. 교육계·언론계·종교계 또는 문화예술계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4. 재심 및 피해구제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 관련 분야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5. 국가인권위원회 또는 인권 관련 단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③ 사법농단피해자들은 제2항의 위원 추천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국무총리가 임명한다.

⑤ 피해구제위원회에는 제1항에 따른 심의·의결에 필요한 사실관계 확인, 관련 자료의 수집과 검토 등을 위한 지원조직을 둘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규정된 사항 외에 피해구제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피해구제위원회의 독립성) 피해구제위원회는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고 업무의 독립성과 객관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9조(피해구제위원회의 기능 등) 피해구제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피해구제조치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사법농단피해자의 피해 구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에 대한 권고

2. 사법농단피해자의 피해 구제를 위한 사건 당사자 및 이해관계인 사이의 조정안 권고

제10조(사실조사 등) ① 피해구제위원회는 제9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데에 필요한 사실 등을 조사할 수 있다.

② 피해구제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사실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사하는 사실과 관련이 있는 기관 또는 개인, 기업 및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자료 제출 및 협조를 요청받은 기관 또는 개인, 기업 및 단체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피해구제위원회는 사법농단피해자의 신청이 있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법농단피해자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1조(피해구제신청) ① 사법농단피해자로서 제9조 각 호의 피해구제 조치를 받으려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피해구제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이하 “피해구제신청”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피해구제신청은 피해구제신청 접수개시결정일부터 6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제4조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재심의 사유를 안 날부터, 신청인이 일정 기간 이상 국외에 거주하는 등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 내에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각각 6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제12조(신청인의 진술권) 신청인은 피해구제위원회의 심의 절차에서 피해구제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13조(피해구제위원회의 결정) ① 제11조제1항에 따른 신청이 이유 있는 경우, 피해구제위원회는 제14조 또는 제15조에 따른 피해구제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 제11조제1항에 따른 신청이 이유 없는 경우, 피해구제위원회는 기각 결정을 할 수 있다.

③ 피해구제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결정을 제11조제1항의 피해구제신청이 있는 날부터 12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구제위원회는 사실조사 등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한 차례만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4조(국가기관 등에 대한 권고 결정) ① 피해구제위원회는 신청인의 피해 구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에 대하여 피해자의 피해를 구제하고 명예를 회복하기 위하여 하여야 할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② 피해구제위원회는 제1항의 결정을 하는 경우 해당 사법농단 사건의 구체적 성격, 피해의 정도, 재판의 공정성 침해 정도를 고려하여 권고의 대상 및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해야 한다.

③ 피해구제위원회는 제1항의 권고 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

당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5조(사인 및 이해관계자에 대한 조정안 권고 결정) ① 피해구제위원회는 사법농단피해자의 피해를 구제하고 명예를 회복하기 위하여 사건 당사자 및 이해관계인에 대하여 조정안을 권고할 수 있다.

② 피해구제위원회는 제1항의 결정을 하는 경우 해당 사법농단 사건의 구체적 성격, 피해의 정도, 재판의 공정성 침해 정도를 고려하여 권고의 대상 및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해야 한다.

③ 피해구제위원회는 제1항의 권고 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사건 당사자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6조(결정서의 송달) ① 피해구제위원회가 제13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결정을 한 때에는 30일 이내에 그 결정서정본을 신청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송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의 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7조(재심의) ① 피해구제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신청인은 제16조에 따른 결정서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피해구제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심에 관하여는 제12조 및 제1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3조 중 “120일”은 “30일”로 본다.

제18조(소멸시효에 관한 특례) 제2조제1호 각 목의 사건으로 발생하는 피해자의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에 관하여 국가는 「민

법」 및 「국가배상법」 등 관계 법령에도 불구하고 소멸시효 완성의 항변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9조(권고 대상 국가기관 등의 권고 결정 준수 의무) 제14조제1항의 권고를 받은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은 해당 권고사항을 존중하고 이행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제4장 보칙

제20조(비밀준수 의무) 피해구제위원회의 위원·직원 또는 위원·직원이었던 자, 피해구제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한 전문가 또는 민간단체와 그 관계자는 피해구제위원회의 비밀에 해당하는 정보·문서·자료 또는 물건을 다른 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밖에 피해구제위원회의 업무수행 외의 목적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1조(자격사칭 금지 등) 누구든지 피해구제위원회의 위원·직원의 자격을 사칭하여 해당 위원회의 권한을 행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장 벌칙

제2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0조를 위반하여 비밀준수 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사람

2. 제21조를 위반하여 위원·직원의 자격을 사칭한 사람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 법의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피해구제위원회 위원의 임명 등
위원회 설립, 피해구제위원회 지원조직 직원의 임명은 이 법 시행
전에 할 수 있다.

11

사법농단의 기록:

경과와 현황, 대응과 과제를 중심으로

[민주변론 111호, 2018년 하반기 게재]

사법농단의 기록 : 경과와 현황, 대응과 과제를 중심으로

서희원 회원·최용근 회원

I. 들어가며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의 조사보고서 발표로 사법농단 사태의 전모가 드러나기 시작한 이래, 160일¹⁾이 지났다. 애초 사법부 내 블랙리스트 문제로 거론되던 사법농단 사태는, 세 차례의 법원 내 자체 조사 및 이후 검찰 수사 과정 등을 거치면서 민간 사찰 의혹, 재판 거래 의혹으로 번져 나갔다. 이 과정에서 국민적 사법 신뢰는 땅에 떨어졌고, ‘이게 사법부냐’는 국민들의 외침은 이제 거리를 메우고 있다.

사법부의 독립이 외압이 아닌 내력에 의해 붕괴되고 있다는 기미는 이미 오래 전부터 드러나고 있었다. 2008년 촛불집회 이후 관련 형사사건에 대하여, 당시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이었던 신영철은 특정 재판부에 사건을 몰아주는 방식으로 재판의 배당에 관여하였을 뿐만 아니라, 재판을 담당하던 형사 단독 판사들에게 “정치적인 냄새가 나는 사건은 보편적 결론을 도출하기 위하여 노력해 달라”는 이메일을 보내고, 야간집회 금지를 규정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규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결정이 있을 후 피고인이 보석으로 석방되자 단독 판사들에게 “보석을 신중히 결정하라”고 압력을 행사하였다.²⁾ 이러한 신영철 당시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의 위헌적 행태에 대하여 법원 안팎의 강력한 비판이 일었으나, 도리어 신영철 원장은 2009. 2. 18. 대법관에 취임하였다. 이에 2009. 11. 6. 당시 야당 국회의원 106명은 신영철 대법관에 대하여 탄핵소추안을 발의³⁾하기에 이르렀지만, 위 탄핵소추안은 당시 한나라당의 비협조로 72시간 이내 표결 절차에 이르지 못해 자동 폐기⁴⁾되었고, 그에 앞서 이용훈 대법원장은 2009. 5.경 신영철 대법관에 대한 ‘엄중 경고’로 위 사안을 마무리 지었을 따름이다.

이후 사법부는 더욱 강력한 수직적 관료화의 흐름에 몸을 맡겼다. 그나마 이용훈 대법원장 재임 중 추진되었던 지방법원-고등법원간 법관 인사 이원화 제도 도입, 고등법원 부장판사 제도 폐지 정책은, 그 후임자인 양승태 대법원장에 의해 사실상 무산되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소수 의견은 점차 줄어들었고, 사법부는 건전한 토론 요구에 대해 징계로 화답했다.⁵⁾ 양승태 대법원장은 “개인적 소신을 법관의 양심으로 오인해선 안 된다”(2011. 12. 신임 법관 임명식), “각각의 재판에서 개별적 사건만 생각할 게 아니라 국민 불안을 잠재울 희망적인 사회규범을 제시해야 한다”(2014. 1. 시무식)는 공식적 발언을 통해 사법부의 ‘안정’을 강조하였는데, 상당수의 법관들은 위 양승태 원장의 메시지가 ‘소신 판결을 자제하라’는 압력으로 느껴졌

1) 이 글을 작성한 것은 2018. 10.말 ~ 11.초이다.

2) 김남희, “젊은 변호사의 고백”, 김남희, 다산북스, 2013. 53-54쪽

3) 의안번호 1806489, 대법관(신영철) 탄핵소추안, 이강래의원 등 4인 외 102인 발의

4) 신영철 대법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2009. 11. 9. 10:08 본회의에 보고되었으나, 국회법 제130조 제2항에 따른 기한 경과(2009. 11. 12. 10:08)로 폐기되었다. ; 탄핵소추안은 본회의에서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 및 조사 절차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국회 본회의는 탄핵소추안이 본회의에 보고된 때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탄핵소추 여부를 무기명투표로 의결하며, 이 기간 내에 표결하지 아니한 탄핵소추안은 폐기된 것으로 본다(국회법 제130조 제1항, 제2항).

5) 2014년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사건의 1심 판결에 대하여 김동진 판사가 이를 ‘지록위마’라 비판하는 글을 법원 내부망인 코트넷에 올리자, 대법원은 3시간 만에 위 글을 직권으로 삭제하고 김동진 판사에게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2017. 9. 21. <한겨레>, ‘양승태 6년’ 소통 안되고 관료화 심해져... “리더십 점수 36점” ;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12080.html ; 2018. 10. 31. 최종방문

다고 말한다.⁶⁾

신영철 대법관의 탄핵안이 폐기된 이래 9년이 흐른 지금, 우리는 사법행정권의 일탈·남용이라는 표현만으로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거대한 사법농단 사태에 직면해 있다. 사법농단 사태는 과거와 달리 한 두 명의 특정 법관에 의한 개별적 일탈행위가 아니라 대법원(특히 법원행정처)을 중심으로 각각의 역할을 조직적으로 분담한 후 이를 실행에 옮긴 집단적 위헌·위법 행위이며, 그 구체적인 양태에 있어서도 민간 영역에 대한 정보 수집과 분석에서부터 입법부·행정부에 대한 설득전략 수립, 나아가 재판을 그들과의 거래 수단으로 활용하였다는 의혹까지 다종·다양하다.

민변은 법률가단체로서, 사법농단 사태 초기부터 지속적으로 활동하면서 이에 대한 진상 규명·책임자 처벌·피해회복·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해 왔다. 특히 민변의 독자적 활동 이외에도, 참여연대·민주노총·한국진보연대 등 시민사회와 함께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회의”⁷⁾를 결성하여, 보다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우선 사법농단 사태가 본격화된 2018. 5.말 경부터 이 글을 쓰는 시기까지를 중심으로, 사법농단 사태의 경과와 현황을 정리해 본다(Ⅱ).⁸⁾ 또한 같은 시기, 사법농단 사태에 대한 민변과 사법농단 시국회의 등 시민사회의 대응을 되짚어 본다(Ⅲ). 나아가 사법농단 사태의 해결을 위해 남겨진 몇 가지 과제에 대해서도 간략히 검토해 본다(Ⅳ).

Ⅱ. 사법농단 사태의 경과와 현황

1. 국제인권법연구회에 대한 견제·와해 조치 및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제기와 사법행정권 남용에 대한 진상조사의 진행 (2017. 2. 13 ~ 2018. 1. 22.)

가. 국제인권법연구회 견제·와해 조치로 촉발된 진상조사

2017. 1. 법원 내 학술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가 대법원장의 권한 분산 등을 주제로 하여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하자, 법원행정처는 국제인권법연구회를 견제하고 이를 와해시킬 목적으로 ‘전문분야 연구회 중복가입 탈퇴 조치’를 단행하였다(2017. 2. 13.). 김형연 부장판사(국제인권법연구회 간사)는 해당 조치가 국제인권법연구회의 활동을 견제하기 위한 목적의 조치라며 법원 내부망(코트넷)에 공개 질의를 하였고, 이에 이규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은 이탄희 판사에게 공개질의에 대한 반대논리를 연구회에 전파하라는 요구를 하였다. 이를 받아들일 수 없었던 이탄희 판사는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임종헌 법원행정처 차장은 중복가입 해제조치의 시행을 유보하겠다는 공지와 함께 이탄희 판사의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기획 제2심의관 겸임을 해제하였다. 이후 2017. 3. 초 법원행정처의 학술대회 견제·축소 및 이탄희 판사에 대한 인사 조치가 언론을 통해 보도되며 논란이 가중되었다. 김형연 부장판사는 진상조사 청원문을 코트넷에 게시하였고, 전국 법원장간담회는 조사기구의 구성을 논의하였다. 논란이 가중되자 양승태 당시 대법원장은 이인복 전 대법관에게 조사권한을 일체 위임하고, 임종헌 차장을 직

6) 위 각주 5) 기사 참조

7) 이하 ‘사법농단 시국회의’라 약칭한다.

8) 다만 필요에 따라 2017. 2.부터 2018. 5.까지의 내용도 간략히 정리하였다.

무 배제시켰다. 이후 대법원 내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조사를 위해 진상조사위원회가 구성되어 실질적인 조사가 시작되었다(2017. 3. 22. ~ 24.경).

나.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의 제기와 추가조사

진상조사위원회의 조사가 시작된 직후 언론을 통해 법원행정처가 ‘양승태 코트’에 비판적인 의견을 밝혀 온 판사들의 성향 및 동향을 파악한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를 관리해왔다는 의혹이 보도되기 시작하였다(2017. 4. 7.). 그러나 진상조사위원회는 ‘일부 사법행정권 남용 행위는 존재하나,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는 존재할 가능성이 없다’는 내용의 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2017. 4. 18.). 이에 전국법관대표회의는 2017. 6. 과 7. 두 차례의 회의를 통해 사법부 블랙리스트의 추가조사 및 사법행정권 남용 책임자의 문책을 대법원장에게 요구하였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새로이 임명된 김명수 대법원장은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에 관하여 추가조사의 시행을 결정하였다(2017. 11. 3.). 민중기 부장판사(당시 법관회의 제도개선 특위 위원장)를 위원장으로 하여 추가조사위원회가 꾸려졌고, 추가조사위원회는 법원행정처 컴퓨터까지 물적 조사 범위를 확대하겠다는 방침 하에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등의 컴퓨터를 확보하여 대대적인 조사를 진행하였다. 두 달여간에 걸친 조사가 마무리된 이후 추가조사위원회는 ‘대법원이 추진 중인 사법정책을 비판하거나 반대하는 법관의 이념적 성향, 인적관계와 행적 등을 분석·평가한 문서가 조사를 통해 발견되었으며, 문서에 적시된 대로의 대응 방안이 실제 실현되었는지, 또는 인사상 불이익 조치가 있었는지 여부를 떠나 그러한 문서가 작성되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법관의 독립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내용의 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2018. 1. 22.).

2. 재판거래 의혹의 등장과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 특별조사단’⁹⁾의 발족 (2018. 1. 22. ~ 2018. 2. 13.)

‘사법부 블랙리스트’ 문건을 찾기 위해 ‘동향’ 등과 같은 키워드를 추출하는 방식으로 법원행정처 기획 제1심의관의 컴퓨터 저장매체를 조사하던 추가조사위원회는 ‘기조실’ 폴더 안에 저장되어 있던 ‘원세훈 전 국정원장 판결 선고 관련 각계 동향’이라는 제목의 문서를 우연히 발견하게 된다. 재판거래 의혹이 처음 수면 위로 올라오게 된 순간이었다.

위 문건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공직선거법위반 및 국정원법위반 사건(서울고등법원 2014노2820)의 선고일 다음날인 2015. 2. 10. 작성된 것으로, 항소심 판결 선고 전후에 걸쳐 청와대, 여야 각 당, 언론, 법원 내부의 동향과 반응을 파악하여 정리하고, 향후 대응 방안을 검토한 것이었다. 해당 문건을 통해 대법원이 항소심 판결 선고 이전 청와대의 ‘문의’에 대해 우회적·간접적으로 항소심 담당 재판부의 동향을 파악하려고 노력하였다는 점과, 판결 선고 이후에는 사법부의 입장을 외부 기관에 상세히 설명하고, 이들 기관의 동향을 파악하려고 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추가조사위원회의 조사 발표 이후 김명수 대법원장은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에게 추가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를 보완하고, 공정한 관점에서 조치방향을 논의하여 제시할 수 있는 기구를 구성할 것을 지시하였고, 이에 따라 특별조사단이 발족되어 사법행정권 남용의혹에

9) 이하 ‘특별조사단’이라 약칭한다.

대한 조사에 착수하였다(2018. 2. 13.).

3. 특별조사단의 조사 결과 발표 (2018. 2. 13. ~ 2018. 5. 25.)

특별조사단은 5. 25. 세 달여간에 걸친 인적·물적 조사의 결과를 발표하였다.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등이 사용하던 컴퓨터 저장매체를 주요 물적 조사 대상으로 삼아 조사를 진행한 특별조사단은, 추가조사위원회 조사 결과 발견된 문건 이외에도 사법행정권 남용 및 재판거래 의혹과 관련된 문건을 다수 발견하였다. 특별조사단의 조사 결과를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가. 법관 사찰 의혹 등 관련

특별조사단의 조사 결과 법원행정처는 상고법원 도입 등 대법원이 추진하려 하였던 정책에 비판 또는 반대 입장을 밝혀왔던 특정 판사들과 특정 연구회, 법관들의 익명게시판 ‘이판사판 야단법석’(이하 ‘이사야’라 함) 등을 조직적으로 감시하고 사법행정위원회 및 판사회의 선거 등에 개입을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 소모임인 인권과 사법제도 소모임(이하 ‘인사모’라 함)은 바람직한 합의부 조직과 운용, 사실심 충실화, 사법행정 참여 판사의 대표성 확보 등을 위한 판사회의 실질화 방안, 법관인사 이원화 등 다양한 사법행정 이슈를 논의하였는데, 그 방향이 대법원이 추진하던 사법행정 방향과 다르다는 이유로 주시의 대상이 되었다. 박병대 당시 법원행정처장은 ‘국제인권법연구회가 우리법연구회와 비슷한 모임으로 보이니 잘 챙겨보라’고 지시하였고, 임종헌 차장, 이규진 상임위원, 박상언 기획조정심의관, 김연학 인사총괄심의관 등은 국제인권법연구회의 동향을 분석하고, 이를 와해시키기 위해 중복가입해소조치 등의 ‘로드맵’을 작성하였으며, 공동학술대회 개최가 ‘사법부 독립 및 인사제도의 근간을 뒤흔들 위험성이 있다’며 해당 행사의 무산 또는 축소를 위한 방안을 검토·시행하였다. 법원행정처가 헌법상 독립기관인 법관들로 구성된 특정 연구 모임을 지속적으로 사찰하고, 조직을 와해하려고 한 정황이 밝혀진 것이다.

이외에도 특별조사단은 법원행정처가 법관들의 익명 인터넷 카페인 이사야에 상고법원 설치 등 대법원이 추진 중인 사법정책 현안을 비판하는 글이 많이 게시된다는 이유로 해당 카페의 자발적인 폐쇄를 유도하고, 회원으로 가장하여 카페 내 활동 중단을 요구하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또한 법원행정처는 사법부 주요 행정현안 결정에 일선 판사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만든 사법행정위원회 위원 후보 성향을 분석하고 추천에 개입을 시도하였으며, 안건을 통제하려 하였다. 나아가 법원행정처가 2015년, 2016년 서울중앙지방법원 단독판사회의 의장 선거에 개입하고, 서울중앙지방법원 단독판사회의 활동 및 단독판사들에 대한 동향을 파악한 사실도 확인되었다. 법원행정처가 사법행정에 대한 자문기관으로서의 판사회의의 역할을 부정하고, 이를 형해화하기 위해 그 활동을 방해하는 데 앞장선 것이다.

한편 특별조사단은 조사를 통하여 법원행정처가 임종헌 전 차장 등의 지시로 2014년부터 2016년경까지 대법원의 정책에 반대하는 의견을 표명한 법관들의 성향을 파악하고 이들에 대한 대응방안을 검토한 문건을 확보하였다. 차성안 판사 등의 성향을 분석한 이 문건에는 차 판사가 다른 판사들에게 보낸 이메일 내용, 사인간의 채무관계가 포함된 재

산관계 사항 등이 포함되어 있어 법원행정처가 ‘사찰’의 수준에 이르는 정보 수집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별조사단은 ‘특정 법관의 리스트를 작성하여 그들에 대하여 조직적, 체계적으로 인 사상의 불이익을 부과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를 발견할 수는 없었으나, 사법정책에 비판적인 법관들에 대한 성향, 동향, 재산관계 등을 파악한 것은 헌법이 공정한 재판의 실현을 위해 선언한 재판의 독립, 법관의 독립이라는 가치를 훼손한 것’이라고 평가하였다.¹⁰⁾

나. 재판거래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은 대법원이 상고법원안 통과에 핵심 키를 쥐고 있는 청와대에 협력을 구하 면서, 그 대가로 이미 선고된 재판 결과 중 일부를 ‘사법부가 정권에 협조한 사례’라고 제시하는 등, 정권이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안에 대하여 여러 방식으로 재판에 개입하거나 거래한 정황을 보여주는 문건을 다수 발견하였다.

조사를 통해 확보된 문건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BH의 최대 관심 현안”이라고 판단 한 원세훈 전 국정원장 사건의 항소심 판결 선고 이전 재판장과 주심판사의 성향을 분석 하였으며, ‘청와대가 항소기각을 기대하면서 법무비서관실을 통하여 법원행정처에 전망 을 문의’하였으나 ‘결과 예측이 매우 어려워 행정처가 불안해하고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 문건을 작성하였다.¹¹⁾ 또한 항소기각 판결이 나올 경우 사법부 내부에 불만과 갈등이 표 출되지 않도록 감시체제를 구축하려 하였으며, 법관 정기 인사를 통해 불만을 잠재우겠 다는 의도를 내비친 문건을 작성하기도 하였다. 항소심 판결 선고 후 동향을 분석한 문 건에는 ‘우병우 민정수석이 사법부에 대한 큰 불만을 표시하면서, 향후 결론에 재고의 여지가 있는 경우에는 상고심 절차를 조속히 진행하고 전원합의체에 회부해 줄 것을 희 망’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 법원행정처와 청와대가 해당 사건에 대하여 지속적 으로 의견을 조율해왔다는 점을 드러냈다. 또한 ‘지논파일과 시큐리티 파일의 증거능력 판단 차이가 사건 전체를 좌우한다’는 내용과, 해당 사건의 결과가 정권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음을 분석한 문건을 상고심 판단에 관여한 담당 재판연구관에게 전달한 사실도 확 인되었다.¹²⁾

법원행정처는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효력 집행정지 사건과 관련하여서도 여러 문 건을 생산했다. 이들 문건에는 재항고 인용결정이 청와대와 대법원 양측에 ‘원인의 결과’ 로 작용할 것이라고 분석하고,¹³⁾ 청와대의 관심사건인 전교조 법외노조 효력정지 재항고 심의 사건 처리 방향과 시기를 청와대와의 협상 카드로 제시¹⁴⁾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 다. 대법원은 위 문건 내용과 같이 2015. 6. 2. 고용노동부장관의 재항고를 인용하여 효 력정지 파기환송 결정을 하였다. 법원행정처는 이 결정을 ‘사법부가 정부 운영에 협력한

10) 특별조사단 조사보고서 182-183쪽

11) 특별조사단 조사보고서 [첨부 2] 기재 문건 순번 59번, “원세훈 전 국정원장 판결 선고 관련 각계 동향” 참조, 이하 같은 [첨부 2] 기재 문건을 인용할 때에는 ‘문건명 [문건번호]’의 기재례를 따른다.

12) 2018. 5. 31. <한겨레>, “판사 복귀 뒤에도 ‘BH 설득 문건’ 만들고...동료 법관 뒤 캐고...” ;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47066.html ; 2018. 11. 7. 최종 방문

13)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효력 집행정지 관련 검토 [151]

14) 원세훈 전 국정원장 관련 검토 [58], 국무총리 대국민담화의 영향 분석과 대응 방향 검토 [204, 205, 295, 298], 성완종 리스트 영향 분석 및 대응 방향 검토 [152, 300, 304] 등

대표적인 사례'로 열거하며 상고법원 추진을 위한 설득방안으로 내세우기도 하였다.¹⁵⁾

법원행정처는 통상임금 전원합의체 판결 선고 이전, 해당 판결 결과에 따른 사회적 반응을 미리 분석하고, 그 경제적 영향에 대하여 분석하는 보고서를 작성하기도 하였다.¹⁶⁾ 또한 임종헌 당시 법원행정처 기조실장은 청와대 법무비서관 등을 통하여 민정수석에게 판결의 취지를 설명하고, 민정수석실의 평가를 전해 듣기도 하였다. 이는 법원행정처와 청와대가 판결 내용에 관하여 사전 교감을 나누고 있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특별조사단의 조사보고서 기재에 의하면, 대법원 판례에 반하여 긴급조치 피해자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선고한 법관을 표적으로 삼아 징계를 검토한 사례¹⁷⁾, 통합진보당 지방의원 지위확인소송의 재판 내용과 결론을 검토¹⁸⁾한 사례, 심지어 의원직 유지에 특별한 문제제기가 없는 지역구 지방의원에 대하여 그 의원직을 상실시키는 행정소송을 법원행정처가 지방자치단체장으로 하여금 제기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한 사례, 구체적인 청구취지 및 청구이유를 제시한 사례¹⁹⁾ 등도 확인되었다.

무엇보다 충격적인 것은, 법원행정처가 상고법원 입법추진을 위해 청와대를 설득하는 과정에서 국가배상책임을 제한하는 내용의 과거사 판결, 이석기 전 의원 내란음모 판결, 전교조 관련 판결, 통상임금 판결, 키코 판결, 수서발 KTX 자회사 설립등기 판결, KTX 승무원 판결, 콜텍·쌍용자동차 정리해고 판결, 철도노조 파업 판결 등을 '정부 운영에 대한 사법부의 구체적 협력 사례'로 제시²⁰⁾한 것이었다. 또한 대법원이 청와대에 '협력사례'로 언급한 판결 중에는 당시 대법원의 심리가 진행 중이던 발레오만도 사건도 포함되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나,²¹⁾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판결이 선고되기 이전의 재판도 거래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정황이 드러났다.

특별조사단은 위와 같이 드러난 사실 등에 대하여, '상고심의 절박한 상황을 해결해야 한다는 미명 하에 판결을 거래나 흥정의 수단으로 삼으려고 한 흔적들이 발견되었다'²²⁾고 평가하였다.

4. 특별조사단 조사 결과에 대한 법원의 반응 (2018. 5. 25. ~ 2018. 6. 18.)

특별조사단의 조사 결과 발표 직후 김명수 대법원장은 "사법농단 의혹에 대해 합당한 조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2018. 5. 28.). 이후 김명수 대법원장은 '특별조사단 조사 결과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올리는 말씀'이라는 제목의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여, "관련자들에 대한 엄정한 징계를 신속히 진행할 것이며, 조사 자료 중 의혹 해소를 위해 필요한 부분의 공개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전했으며, 법원행정처의 물적·인적 완전 분리를 약속하였다(2018. 5. 31.).

한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김명수 대법원장의 대국민 담화문 발표 바로 다음날인 6. 1.

15) 현안 관련 말씀 자료 [70], 상고법원 추진을 위한 BH 설득 방안 [80], 정부 운영에 대한 사법부의 협력 사례 [71]

16) 정기상여금 통상임금 포함시 경제적 영향 분석 [409], 통상임금 판결 선고 후 각계 동향 [69]

17) 대법원 판례를 정면으로 위반한 하급심 판결에 대한 대책 [73, 395]

18) 통진당 행정소송 검토보고(대외비) [74], 통진당 비례대표지방의원 행정소송 예상 및 파장 분석 [76]

19) 통진당 지역구 지방의원 대책 검토 [75], 통진당 지역구 지방의회의원 상대 제소 [175]

20) 현안 관련 말씀 자료 [70], 상고법원 관련 BH 대응전략 [79, 359], 상고법원 추진을 위한 BH 설득 방안 [80], 정부 운영에 대한 사법부의 협력 사례 [71]

21) 정부 운영에 대한 사법부의 협력사례 [71]

22) 특별조사단 조사보고서 183쪽 참고

기자회견을 통해 “대법원장으로 재직하면서 대법원의 재판이나 하급심의 재판이건 간에 부당하게 간섭, 관여한 바가 결단코 없다”며 관련 의혹을 강력히 부인하였다²³⁾. 전국법관대표회의와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이하 ‘사법발전위원회’라 함)는 의혹 문건 원문의 제출을 요구하고 수사 필요 의견을 대법원장에게 전달하였으며, KTX 해고 승무원 등 재판 거래 피해자들의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에 대한 공동고발도 잇따랐다.

대법원은 6. 5., 특별조사단이 조사한 대상 문건 중 98건을 비실명화하여 원문 공개²⁴⁾하였으며, 김명수 대법원장은 재차 대국민담화를 통해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의견을 밝혔다(2018. 6. 15.). 그러나 대법원장의 이러한 의견 발표 직후 대법관 13명은 “재판거래 의혹은 근거가 없다”는 취지의 입장문을 발표하였다.

5. 검찰의 본격적인 수사 개시 (2018. 6. 18. ~ 2018. 7. 25.)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사건이 2018. 6. 18. 서울중앙지검 특수 1부에 재배당된 이후, 검찰은 대법원에 의혹 관련자 하드디스크 등 자료에 대한 임의제출 요청, 참여연대 임지봉 교수(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하창우 전 대한변협 회장·민변 송상교 사무총장 등 관계자에 대한 참고인조사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하였다.

대법원은 검찰의 임의제출 요구에 대하여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410개 파일 원본을 제출하였으나, 양승태 전 대법원장, 박병대 전 대법관등의 컴퓨터 하드디스크의 모든 데이터가 이미 2017. 10. 디가우징 방식을 통해 삭제되었다고 전했다(2018. 6. 26.). 대법원은 「전산장비운영관리지침」 등 관련 규정과 통상적인 업무처리 절차에 따라 ‘디가우징’한 것이라고 밝혔으나, 2017. 2. 인사이동 당일 새벽 2만 4500여개의 파일을 삭제한 김민수 부장판사의 경우와 같이 증거인멸을 시도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검찰은 2018. 7. 17. 해당 하드디스크를 확보하여 복구를 시도하였다.

검찰의 수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자, 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는 2018. 7. 20. 사법행정권 남용의혹에 연루된 판사 13명의 징계여부에 대하여 첫 심의를 진행하였다. 검찰은 강제수사로 전환하여 양승태, 박병대, 임종현, 이규진, 김민수 등의 자택, 사무실, 이메일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였으나(2018. 7. 20.), 임종현의 자택·사무실을 제외하고는 ‘주거의 평온을 침해할 정도의 소명이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모두 기각되었다(서울중앙지법

23) 2018. 6. 1. <중앙일보>, “[전문] ‘재판 거래 의혹’ 양승태 前대법관 기자회견” ;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5&aid=0002825465>; 2018. 11. 7. 최종방문

24) 법원행정처가 이른바 사법농단 사태와 관련된 문건을 공개한 방식에 대하여는 본 지면을 빌려 문제를 제기해 둔다. 특별조사단이 2018. 5. 25. 조사 결과를 발표하였으나, 410건의 조사대상 문건에 대하여는 조사보고서에 그 목록만을 첨부하였을 뿐이다. 이후 사법농단 사태의 진상규명 차원에서 조사대상 문건에 대한 공개 요구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법원행정처는 2018. 6. 5. 및 2018. 7. 31. 두 차례에 걸쳐 위 문건 대부분을 공개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법원행정처는 위 문건들의 공개에 있어 대법원 홈페이지 등의 게시와 같이 일반 시민 모두가 접근할 수 있는 방식을 취하지 않고, 법원 내부 또는 언론을 통한 간접적 방식을 택했다. 사법농단 사태의 최대 피해자인 국민들은, 사법부(법원행정처)로부터 직접 위 정보를 취득할 수 없었고, 언론 또는 시민단체의 조력이라는 수단을 통해서야 비로소 위 사법농단의 실태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법원행정처의 소극적 공개 방침은 그 효과의 측면에서도 이해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위 문건들의 공개가 국민의 알 권리 보장 차원 또는 사법농단 사태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단순한 여론의 환기 또는 사법부 내부의 압박에 이기지 못한 “어쩔 수 없는 선택”으로 이루어졌다는 의심을 피하기 어렵다. 국민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사법부가 가장 두려워해야 할 대상은 대법원장도, 법관대표회의도, 전국법원장회의도, 대통령도 아니다. 바로 국민이다.

이언학 영장전담 부장판사). 검찰은 임종헌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직원의 가방 속에 담긴 USB를 발견했고, 해당 USB안에는 특별조사단이 공개한 410개 문건 외에 새로운 문건이 저장되어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2018. 7. 21.). 이를 토대로 검찰은 양승태, 박병대, 이규진 등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재청구(2018. 7. 25.) 하였으나, 이 또한 ‘양승태와 박병대가 임종헌과 공모하였다는 점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 ‘나머지 피의자들에 대해 1차 영장 기각 때와 사정변경이 없다’는 이유로 전부 기각되었다(서울중앙지법 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

6.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 문건 추가 공개 (2018. 7. 31.)

대법원은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 문건 중 2018. 6. 5. 1차로 공개된 문건 이외에 추가로 문건을 공개하기로 결정하고(2018. 7. 26.), 비실명화 작업을 거쳐 2018. 7. 31. 228개의 추가 문건을 법원 내부 통신망과 언론을 통해 공개하였다. 추가 공개된 문건에는 법원행정처가 상고법원 입법을 위하여 국회의원을 압박·회유하고 법무부와의 ‘빅딜’ 전략을 수립하며, 변호사단체들에 대한 압박을 시도하고 광범위한 상고법원 홍보 전략을 짜는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상고법원 도입을 위한 국회의원에 대한 ‘강온양면 로비’ 관련

추가 공개된 문서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상고법원안 통과를 위하여 법사위 의원 등을 압박하거나 회유하는 전략을 수립하였다.²⁵⁾ 상고법원안에 반대 입장을 표명한 주요 법사위 의원들의 성향을 분석하고, 설득 방안을 고안했다. 해당 의원들과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의원들을 통해 설득을 하는 방안을 구상하였으며, 그럼에도 반대 의견을 표명하는 의원들에 대해서는 ‘고립화 전략’을 제시하기도 했다. 또한 20대 국회 정당별 국회의원들의 이력과 평판, 사법부에 대한 인식 등을 정리하기도 했다.²⁶⁾

나. 상고법원 도입을 위한 청와대 대응 전략 관련

법원행정처는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청와대 주요 관계자들과 접촉하고, 청와대의 ‘주요 관심사항’에 대한 ‘법원의 협조 노력을 피력’하려 애썼다. 그 중에는 이병기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을 설득하기 위하여 산케이 신문 서울지국장 사건 및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청구사건과 관련한 ‘청와대의 요구사항’을 접수하는 등의 내용,²⁷⁾ 청와대가 상고법원 도입에 찬성하도록 ‘상고법원 판사 임명 시 청와대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을 수용할 수 있다고 설득하자’는 내용²⁸⁾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다. 상고법원 도입을 위한 법무부와의 협상 전략 관련

25) 의원별 대응전략 [128], 상고법원 입법 추진을 위한 야당 설득 및 대응 전략 [142] 등

26) 제20대 국회의원 분석 [171]

27) 상고법원 관련 BH 대응전략 [79, 359]

28) BH로부터의 상고법원 입법추진동력 확보방안 검토 [93] 등

법원행정처는 상고법원안 통과를 위해 법무부와의 “담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법원행정처는 법무부에 대한 압박 방안으로 디지털증거 압수수색 영장에 대한 절차적 통제, 체포영장제도 개혁 등을 검토하고, 회유 방안으로 디지털 증거의 증거능력 인정 확대 방안, 공안사건 전담 재판부 설치 방안 등을 검토하였다.²⁹⁾

라. 상고법원 홍보 관련

법원행정처는 라디오, 신문, 방송 등을 통하여 상고법원을 홍보하는 전략을 수립하기도 하였다. 조선일보를 통해 상고법원을 집중 홍보하기로 한 법원행정처는 조선일보에 전국 변호사를 상대로 한 설문조사, 내부 필진의 칼럼, 외부 기고문 게재 등을 주문하며 그 대가로 10억 원의 법원 예산을 광고비로 지급하는 계획을 세웠다.³⁰⁾ 심지어 상고법원 설치를 지지하는 언론 기고문을 대필한 정황도 확인되었다.³¹⁾

마. 민변·대한변협 대응 관련

법원행정처는 상고법원 도입에 반대한 민변에 대하여도 대응전략을 수립하였다. 민변의 현황을 분석하고, 내부 의사결정방식 등 세세한 정보와 동향을 파악하였으며, 민변 내 상고법원안 찬성 세력을 확인·모색하고, 그들이 적극적인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검토하였다.³²⁾ 또한, 개헌특위 전문위원 선정과 관련된 내용들이 기재된 곳에 민변 소속 변호사 중 일부를 ‘블랙리스트’로 특정한 내용의 문건을 작성하기도 하였다.³³⁾

대법원은 대한변협이 2014. 8. 25. 변호사대회에서 대법관 증원에 대한 결의문을 채택하자 대한변협을 압박·제재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였는데, 그 중에는 변호사평가제의 도입·필수적 변호사 변론주의 반대·대한변협 신문 광고 게재 중단·대한변협 법률구조재단 공탁지원금 규모 축소 등이 포함되었다.³⁴⁾

7. 검찰의 수사 진행

가. 검찰 수사 과정에서의 문제점

1) 잇따른 압수수색 영장 기각

검찰은 압수된 임종헌 USB에서 법원행정처 재직 시절 작성한 추가 문건들을 발견한 이후 수사에 더욱 박차를 가하며, 법관 사찰·부산 법조비리 은폐·강제징용 재판거래 의혹 등과 관련하여 법원행정처 인사심의관실·윤리감사관실·국제심의관실, 전·현직 판

29) 상고법원 입법추진동력 boom-up 방안 검토 [87], 상고법원 입법추진을 위한 법무부 설득방안 [373] 문건 등

30) 조선일보를 통한 상고법원 홍보전략 [97]

31) 상고법원 기고문 조선일보 버전(김OO) [86] 등

32) 상고법원 입법추진관련 민변대응전략 [84, 377]

33) 000086_야당분석 [389]

34) 대한변협압박방안검토 [83]

사와 외교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법원은 “국가의 중대한 이익과 관련한 공무상 비밀에 해당한다.” “행정처의 임의제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당시 법원행정처가 작성한 문건 내용은 부적절하나, 일개 심의관이 작성한 문건대로 대법관이 재판할 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이를 대부분 기각하고, 일제 강제징용 재판거래 사건의 참고인에 불과한 외교부에 대해서만 영장을 발부하였다. 이후에도 법원은 검찰이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을 잇달아 기각하며, 범죄혐의에 대한 소명 부족, 임의제출 가능성의 존재, 범죄 결과 발생 가능성의 부재, 국가의 중대한 이익과 관련된 공무상 비밀 해당 등을 이유로 들었다. 이로 인하여 한때 사법농단 관련 영장 기각률이 90%에 육박³⁵⁾하였다.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영장전담 재판부를 두 곳(명재권·임민성 부장판사) 추가 증설하였다(2018. 8. 30. 및 2018. 9. 27.).

2) 증거인멸 논란

법원이 잇따라 영장을 기각하는 사이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된 전·현직 판사들이 증거를 인멸하고 있다는 보도도 이어졌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에 출석한 연루 법관들이 휴대전화를 무더기로 교체 또는 ‘분실’하였고 업무일지 또한 파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³⁶⁾

법원의 영장심사가 미뤄지는 와중에 증거인멸도 자행되었다. 검찰은 유해용 변호사(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원)가 퇴직 시(2018. 2. 경) ‘박근혜 비선진료’ 관련자인 박채윤씨의 특허소송 관련 자료를 무단으로 반출한 혐의를 포착, 2018. 9. 5. 그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였다. 그러던 중 대법원 재판과 관련한 기밀 자료³⁷⁾ 다수를 발견하고 법원에 압수수색영장을 재차 청구하였다(2018. 9. 7.). 법원의 영장심사가 사흘간이나 미뤄지는 사이, 유 변호사는 2018. 9. 10. 법원행정처에 관련 자료를 파기하였다고 통보했다. 검찰은 2018. 9. 18. 법원에 위 유해용에 대하여 공무상 비밀누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공공기록물관리법 위반, 절도, 변호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으나,³⁸⁾ 기각되었다.

나. 검찰 수사를 통해 드러난 사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사법농단 수사에 특수부 3곳(특수1부·특수3부·특수4부)을 추가로 투입하여 의혹 규명에 나섰다. 관련자 소환 조사, 압수수색 등을 통해 검찰이 확보한 것으로 드러난 사실 중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35) 2018. 8. 29. <JTBC>, “법원에 막힌 사법농단 수사…압수수색 영장 90% 기각” ; <http://news.jtbc.joins.com/html/054/NB11688054.html> ; 2018. 11. 6. 최종방문

36) 2018. 8. 26. <국민일보>, “휴대전화 종량제 봉투에 버리고 송곳으로 찌고… ‘사법농단 증거인멸’ 도 넘은 판사들” ;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2632176&code=61121311&cp=nv> ; 2018. 11. 6. 최종방문

37) 위 기밀 자료 중에는 통합진보당, 강제징용, 전교조 소송, 박채윤씨 특허소송 관련 문건이 포함되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38) 이는 사법농단 수사 과정에서의 첫 구속영장 청구였다.

1)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정점으로 한 조직적 범죄행위 - 윗선 개입의 정황

검찰 수사를 통해 일련의 사법농단 사태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정점으로 한 조직적 범죄라는 증거가 차츰 확보되었다. 특히 외교부에 대한 압수수색 등을 통해 차한성·박병대·고영한 전임 법원행정처장이 재판거래에 연루되어 있음이 확인되었다. 차한성·박병대의 경우 김기춘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과 만나 강제징용 사건³⁹⁾⁴⁰⁾에 관하여 논의한 정황이 확인되었으며, 그 후임인 고영한은 부산 문 모 판사 관련 재판개입에 연루되어 있음이 밝혀졌다⁴¹⁾. 이는 법원 내의 조사 단계에서는 드러나지 않았던 것으로, 세 명의 법원행정처장을 모두 임명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총괄적이고 포괄적 지시가 있었음을 추단하게 하는 내용이다.

2) 재판거래·재판개입의 ‘스모킹 건’

가) 일제 강제징용 사건 관련

검찰은 임종헌의 USB에서 ‘강제징용 관련 외교부와의 관계’ 문건을 확보하였다. 해당 문건들에는 법원이 외교부를 의식하여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제기한 민사소송을 지연시키는 방안 등이 담겼다. 강제징용 재판 지연을 매개로 판사들이 해외 공판 파견 등 협조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취지의 내용도 포함되었다. 이후 임종헌은 2013. 10. 29. 청와대를 방문해 주철기 당시 외교안보수석을 만나 강제징용 소송 경과 및 향후 진행 방향에 대한 설명과 함께 주유엔 대표부 법관 파견을 청탁한 것으로 전해졌다.⁴²⁾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2013. 12. 경 차한성 당시 법원행정처장이 김기춘 비서실장을 공관에서 만나 강제징용 소송을 미루는 대가로 법관의 해외파견 자리를 거래한 정황이 포착되었다고 밝혔다.

또한 검찰은 외교부 기획조정실 등을 압수수색 하는 과정에서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이 작성한 문건(2013. 9. 작성)을 발견하였는데, 해당 문건에는 ‘대일본 관계 악화’를 우려하는 외교부의 입장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강제징용 재판에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을 신설하기 위해 노력할 예정이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⁴³⁾ 실제 대법원은 2015. 1. 국가기관이 대법원에 재판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민

39) 2018. 8. 14. <SBS>, “검찰 ”김기춘, 차한성 대법관과 강제징용 재판 논의“ ;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55&aid=0000666873> ; 2018. 11. 7. 최종 방문

40) 2018. 8. 21. <한겨레>, “‘징용배상’ 판결 박병대, 김기춘과 비밀회동...파기 대책 마련 정황” ;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8&aid=0002422150> ; 2018. 11. 7. 최종방문

41) 2018. 8. 31. <뉴스시스>, “고영한 전 대법관, ‘부산 판사 비리’ 은폐 개입 정황” ;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8784200> ; 2018. 11. 7. 최종방문

42) 2018. 8. 6. <한겨레>, “임종헌 ‘법관 파견’ 청탁받은 청와대, 윤병세 외교부 장관에 전달” ;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8&aid=0002420178> ; 2018. 11. 7. 최종방문

43) 2018. 7. 27. <한겨레>, “양승태 행정처, 소송규칙까지 고쳐 ‘강제징용’ 재판개입 정황” ;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8&aid=0002419126> ; 2018. 11. 7. 최종방문

사소송규칙을 개정하였다.

검찰은 2016. 9. 경 임종헌과 이민걸이 외교부를 찾아가 강제징용 재판에 대한 외교부의 공식 의견을 빨리 제출하라고 재촉하면서, “양승태 원장의 임기 내에 끝내야 한다”고 강조한 정황을 확인하였다. 대법원의 이러한 재촉을 받은 외교부는 2016. 11. 일제 전범기업의 배상 책임을 묻는 대법원 판결이 한일 관계를 파국으로 몰아갈 수 있다는 등의 입장이 담긴 의견을 제출하였다. 검찰은 이민걸 당시 법원행정처 기조실장이 외교부의 의견을 직접 감수까지 한 정황도 확인했다.⁴⁴⁾

곽병훈 전 청와대 법무비서관은 검찰 소환 조사에서 청와대와 대법원이 강제징용 소송에 개입하였다는 의혹에 관하여 “법원행정처의 요구가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⁴⁵⁾

나) 통합진보당 지방의원·국회의원 지위확인소송 등 관련

검찰은 통합진보당 지방의원 지위확인소송 재판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도중, 이규진이 특별조사단 조사 과정에서 “박병대 처장과 임종헌 차장이 ‘의원직 판단 권한은 사법부에 있다’고 판결문에서 밝힐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를 심경 심의관을 통해 재판부에 전달했다”고 진술했던 사실을 확인했다.⁴⁶⁾ 실제 해당 재판의 판결문에는 행정처의 의견대로 ‘의원직 상실 여부에 대한 판단은 헌재가 아니라 법원에 있다’는 내용이 반영되었다.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바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이미옥 전 통합진보당 광주시의회 의원 등 5명이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낸 의원직퇴직처분 취소소송과 관련하여 재판부에 ‘각하 처분을 하지 말고 기각하라’라는 뜻을 전달하였으며, 사건을 심리하던 광주지법 판사들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이규진을 통하여 ‘선고를 미뤄달라’는 뜻을 전달하였다. 재판부는 이후 실제 변론을 재개하였다. 이규진은 정기 인사로 재판장이 바뀐 이후에도 판결을 기각하라는 취지를 재차 전달하는 등 재판에 적극적으로 개입한 것으로 알려졌다.⁴⁷⁾

나아가 검찰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대법원이 김재연, 이석기 등 통합진보당 국회의원 지위확인 소송에도 개입한 정황을 파악했다. 김현석 당시 선임재판연구관은 법원행정처로부터 2016. 6. 작성된 ‘통진당 사건 전합 회부에 관한 의견’ 문건을 받아 유해용 당시 수석재판연구관에게 전달하였다.⁴⁸⁾ 대법원 재판의 사건 분석,

44) 2018. 9. 9. <MBC>, “양승태 대법원, 강제징용 판결 뒤집으려 외교부 의견서 직접 감수” ; http://imnews.imbc.com/news/2018/society/article/4815083_22673.html ; 2018. 11. 6. 최종 방문

45) 2018. 9. 7. <머니투데이>, “곽병훈 특비서관 ”강제징용 소송 개입, 법원행정처 요구 있었다“ ;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8&aid=0004102339> ; 2018. 11. 7. 최종 방문

46) 2018. 8. 10. <한겨레>, “이규진 ”박병대 법원행정처장 지시로 통합진보당 소송 개입“ ;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8&aid=0002420860> ; 2018. 11. 7. 최종 방문

47) 2018. 10. 25. <경향신문>, “법원행정처, 진보당 지방의원 소송 또 개입” ;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32&aid=0002901669> ; 2018. 11. 7. 최종 방문

48) 2018. 9. 8. <한겨레>, “통진당 소속 개입 행정처 문건, 수석재판연구관에 전달” ;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8&aid=000242>

법리 검토, 판결문 작성 등을 도맡는 재판연구관에게 해당 문건을 전달한 만큼 그 내용이 대법관들에게 보고되어 결정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이다.

다) 통상임금 관련

검찰은 권순일 대법관이 법원행정처 차장 시절 통상임금 사건 판결을 앞둔 2013. 9. 4. 청와대를 방문한 기록을 확보하였다고 밝혔다.⁴⁹⁾ 실제 권순일 대법관이 청와대를 방문한 것으로 밝혀진 다음날 통상임금 전원합의체 판결 공개변론이 진행되었다. 이에 대해 권순일 대법관이 통상임금 재판 관련 진행상황을 청와대와 논의하기 위하여 판결 전 청와대를 찾은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다.

라)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효력정지 사건 관련

검찰은 고용노동부 관련자와 전교조 소송을 담당했던 대리인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효력정지 2심 재판 진행 중 청와대와 법원행정처가 접촉한 정황을 확인했다. 검찰은, 서울고등법원이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효력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자, 김기춘 비서실장이 고용노동부에 대법원 재항고를 통해 판결을 뒤집으라는 지시를 내렸고, 이 지시를 하달 받은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법원행정처와 그 대응방향을 논의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고 밝혔다.⁵⁰⁾ 이후 임종현의 컴퓨터 하드디스크에서 법원행정처가 2014. 10. 7. 작성한 '(141007)재항고 이유서(전교조-Final)'라는 제목의 문건이 발견되었는데, 2014. 10. 8. 자로 대법원에 제출된 고용노동부의 재항고 이유서와 대조해 본 결과 그 내용이 동일하다는 점을 확인하였다.⁵¹⁾ 임종현은 구속 전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법원행정처가 전교조 집행정지 소송과 관련하여 고용노동부 측의 재항고이유서를 대필해준 의혹에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도 “청와대는 손발이 없기 때문에 행정처가 도와준 것뿐이다”라고 답변했다.⁵²⁾ 한편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전교조 법외노조 관련 문건을 작성한 법원행정처 심의관이 당해 문건의 파일명을 ‘건강검진 안내문’으로 위장하여 기재한 사실을 확인하였는바, 위 심의관은 검찰 조사 과정에서 “문제가 될까 무서워서 제목을 바꿨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⁵³⁾

⁴⁴⁷⁵ ; 2018. 11. 7. 최종 방문

49) 2018. 8. 14. <뉴스1>, “권순일 대법관 ‘통상임금’ 판결 앞두고朴청와대 방문” ;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21&aid=0003533669> ; 2018. 11. 7. 최종 방문

50) 2018. 8. 17. <머니투데이>, “檢, 김기춘 ‘전교조 불법화’ 대법·헌재 압박 정황 포착” ;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8&aid=0004092858> ; 2018. 11. 7. 최종 방문

51) 2018. 8. 29. <경향신문>, “전교조 법외노조 서류, 박근혜 청와대 관여 정황”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808290952005&code=940301 ; 2018. 11. 7. 최종 방문

52) 2018. 10. 26. <오마이뉴스>, 임종현 “전교조 소송? 청와대 손발 없어 도와준 것” ;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482586&CMPT_CD=P0010&utm_source=naver&utm_medium=newsearch&utm_campaign=naver_news ; 2018. 11.

7. 최종 방문

마) 원세훈 사건 관련

조사 과정에서 검찰은 법원행정처가 원세훈 전 국정원장 관련 1심 재판에서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에 대한 법리를 검토·분석한 정황도 발견하였다.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은 2013. 10. 23. 재판부가 공소장 변경을 허가 또는 기각하는 시나리오별로 그에 따른 법리와 파장을 상세히 분석하였다. 해당 문건은 ‘현재로서는 (공소장 변경을) 받아들이지 않을 명분이 없다’고 결론을 내렸는데, 실제 10. 30. 1심 재판부는 공소장 변경을 허가했다.⁵⁴⁾

3) 기타 새로이 제기된 의혹

가)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재판개입 의혹

수사 과정에서 검찰은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이 작성한 위안부 소송 관련 문건을 확보하였다. 2016. 1. 초 작성된 이 문건에는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하려 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분석하고, 이를 각하하거나 기각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⁵⁵⁾ 실제 위안부 피해자 12명은 2016. 1. 28. 소송을 제기하였다. 법원행정처가 박근혜 정부의 외교정책 기조에 부합하고자 정식으로 소장이 접수되기도 전에 소송 내용을 검토하고 미리 결론을 정해 유도하려 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나) 산케이 신문 전 서울지국장 사건 재판개입 의혹

검찰은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7시간 행적에 의혹을 제기하였다가 명예훼손으로 기소된 가토 다쓰야 일본 산케이 신문 전 서울지국장의 1심 재판에 청와대와 법원행정처가 개입한 직접적인 증거를 확보했다. 검찰은 광병훈 당시 청와대 법무비서관이 임종헌 전 차장에게 명예훼손죄로 유죄가 선고된 대법원 판례를 전달하며 “참고하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낸 사실을 확인하였고, 비슷한 시기 임 전 차장의 지시를 받은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이 가토 전 지국장 재판과 관련하여 “명예훼손죄 검토보고서”를 작성하여 청와대 법무비서관실에 보낸 사실도 밝혀냈다.⁵⁶⁾

특히 법원행정처가 2015. 11. 16. 작성한 문건에는 해당 사건 재판의 판결 이유가 “대본처럼” 적혀 있었다. 해당 문건에는 ‘가토 전 국장이 쓴 기사는 허위사실로

53) 2018. 10. 26. <YTN> “'건강검진.hwp', 알고보니 '전교조 불법화' 소송 문건” ; https://www.ytn.co.kr/_ln/0103_201810260029591470 ; 2018. 11. 8. 최종 방문

54) 2018. 7. 23. <한겨레> “법원행정처, 원세훈 1심 공소장 변경부터 개입했다” ;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54398.html ; 2018. 11. 7. 최종 방문

55) 2018. 7. 30. <연합뉴스> “위안부 피해자 소송도 거래 정황...검찰, 문건 확보해 수사” ;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7/30/0200000000AKR20180730051800004.HTML?input=1195m> ; 2018. 11. 7. 최종 방문

56) 2018. 10. 22. <한겨레> “박근혜 청와대, '정윤희 의혹' 가토 지국장 유죄 입증 앞장” ;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66826.html ; 2018. 11. 7. 최종 방문

확인됐다고 밝히고 판결서 이유에도 해당 보도의 허위성을 명백히 판시할 것으로 예정’, ‘일국의 대통령에 대해 허위 보도한 것에 대해 재판부의 엄중한 질책이 있을 것’, ‘매서운 질타 및 경고 메시지 전달’, ‘언론 보도 등을 통해 허위사실 공론화’ 등의 문구가 적혀 있었다.⁵⁷⁾ 이는 세월호 참사 이후 청와대의 관심을 받고 있던 사안에 대해 법원이 스스로 정권에 도움이 되기 위해 유죄 판결 선고와 함께 마치 청와대의 “변호사” 또는 “공보처”로서의 역할을 한 것이다.

다) 한정위헌제청 결정 재판개입 의혹

검찰은 수사과정을 통해 법원행정처가 양 전 대법원장의 지시를 받고 일선 법원의 위헌법률심판제청결정을 취소하도록 한 정황도 확인했다. 일선 재판부가 이미 결론을 내린 상황에서 법원행정처가 이에 개입해 그 결론을 뒤집도록 한 것이다.

2015년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 11부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사건에서 한정위헌결정을 구하는 취지의 위헌법률심판제청결정을 내렸다. 당시 대법원 심의관은 이러한 민사11부의 결정을 법원행정처에서 현재로 전자공문을 발송하는 과정에서 알게 되자, 이를 대법원 수뇌부에 보고하였다. 양 전 대법원장은 법원행정처 간부로 하여금 해당 결정을 내린 재판장인 염 모 부장판사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그 결정을 직권취소할 것을 요구하도록 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해당 위헌법률심판제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법원도 한정위헌결정의 효력을 인정한다”는 취지로 사용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행정처 간부의 전화를 받은 재판장은 이미 원고에게 송달되어 효력이 발생한 해당 결정을 취소하고, 대신 단순위헌 여부를 묻는 취지의 위헌법률심판제청 결정을 내렸다. 법원행정처는 이러한 재판개입 사실을 은폐하기 위하여 전산정보국을 동원하여 법원 내부 전산망인 ‘코트넷’에서 해당 결정문을 볼 수 없도록 조치를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⁵⁸⁾

라) 헌법재판소 기밀 유출 의혹

검찰은 임종헌 USB에서 발견된 문건을 통해, 2015.부터 2018. 초 까지 헌법재판소에서 파견 근무를 하던 최희준 부장판사에 의해, 헌법재판소 사건 관련 재판관평의 내용 및 다른 연구관들의 보고서가 유출된 사실을 확인했다. 최희준은 긴급조치 배상판결, 과거사 국가배상 소멸시효 관련 판결, 현대차 노조원 업무방해 판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한 헌법재판소 기밀을 이규진과 임종헌에게 유출하였다.⁵⁹⁾ 이규진은 검찰 조사에서 헌법재판소 내부 동향 파악은 임종헌의 지시

57) 2018. 7. 27. <한국일보> “박근혜 7시간 명예훼손 선고 ‘대본’ 미리 된 양승태 행정처” ; <http://www.hankookilbo.com/News/Read/201807261740057114> ; 2018. 11. 7. 최종방문

58) 2018. 9. 11. <경향신문> “양승태 행정처, 일선 법원 결정 뒤집었다”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809112211005&code=940301 ; 2018. 11. 7. 최종 방문

59) 2018. 8. 22. <오마이뉴스> “‘탄핵심판 유출’ 판사 소환...잇선 향하는 검찰 수사” ;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465325&CMPT_CD=P0010&utm_source=naver&utm_medium=newsearch&utm_campaign=naver_news ; 2018. 11. 7. 최종 방문

에 따라 이뤄진 일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⁶⁰⁾ 나아가 위 자료들이 임 전 차장을 거쳐 박병대 당시 법원행정처장과 양 전 대법원장에게 보고된 사실까지도 수사 과정에서 드러나면서, 대법원이 헌법재판소를 견제하기 위하여 내부 정보를 수집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마) ‘헌법재판소 무력화 방안’ 검토

양승태 사법부는 상고법원 도입 이후 대법원이 ‘정책 법원’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해야 하는데, 헌법재판소와 그 역할이 겹칠 수 있으므로, 헌법재판소를 사전에 견제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대법원장의 헌법재판관 추천권을 이용하여, 헌법재판소의 역량을 약화시키고 헌법재판소와 관련한 여론을 악화시키는 방안을 적시한 ‘헌재 관련 비상적 대처 방안’ 문건을 작성하였다.⁶¹⁾ 이후 검찰 조사를 통해 법원행정처가 헌법재판소장을 비판하는 기사를 대필한 정황도 파악되었다.⁶²⁾

바) 부산 법조비리 사건 무마 의혹

2015. 5. 조현오 전 경찰청장의 뇌물수수 혐의를 수사하던 검찰은 당시 부산고법 문 모 부장판사가 건설업자인 정 모 씨로부터 접대를 받은 것을 확인하고 문 전 부장판사의 비위사실과 관련한 자료를 당시 임 전 차장에게 전달하였다. 법원행정처는 문 전 부장판사에 대하여 경고조치 지시만을 내리고 어떠한 징계조치도 하지 않았다. 검찰은 당시 법원행정처가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현기완 전 청와대 정무수석을 창구로 활용하기 위하여 현 전 수석과 긴밀한 관계였던 문 모 판사의 비위 의혹을 문제 삼지 않았다고 볼 만한 증거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⁶³⁾

사) 국회의원 관련 재판에의 개입 의혹

법원행정처는 2016. 11. 홍일표 자유한국당 의원이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기소되기 이전에 홍 의원의 입장에서 방어 방법을 검토하고, 예상 형량을 기재한 문건을 작성하기도 하였다. 돈을 건넨 A가 수사 과정에서 진술을 번복하자, 이에 맞추어 ‘입금된 자금 흐름을 명백히 밝혀 A의 진술을 탄핵한다’는 등의 내용을 담은 문건을 작성하였다.⁶⁴⁾

60) 2018. 8. 25. <한겨레> “양승태 대법원, 헌재 내부 파악은 임종헌이 지시” ;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59171.html ; 2018. 11. 7. 최종 방문
61) 2015. 10. 경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에서 작성된 문건으로, 검찰 수사 과정에서 확보되었다.
62) 2018. 9. 7. <뉴스시스> “‘헌재 소장 비난’ 언론 기사, 양승태 행정처가 기획·대필 했다” ;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80906_0000411841&cID=10201&pID=10200 ; 2018. 11. 7. 최종 방문
63) 2018. 8. 31. <경향신문> “‘부산 법조비리 은폐’ 의혹 사건 담당 법원장 ”고영한 대법관 지시 재판장에 전달“ 진술”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808311401001&code=940301 ; 2018. 11. 7. 최종 방문
64) 2018. 8. 12. <JTBC> “기소되기도 전에...행정처, ‘홍일표 방어방법’ 검토 정황” ; <http://news.jtbc.joins.com/html/613/NB11679613.html> ; 2018. 11. 7. 최종 방문

그밖에도 검찰은 법원행정처가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법원이 반대하는 특허 정책과 관련하여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특허청장을 비판할 수 있도록 발언 요지를 만들어 보내고, 그 대가로 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던 유 의원에게 재판 대응 전략을 자문해 준 정황을 파악했다. 실제 유 의원은 상임위에서 유사 내용으로 특허청장을 질타했고,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인 벌금 300만 원 형을 선고받았던 유 의원은 행정처의 법률자문 이후 2심에서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는 벌금 90만 원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임종헌이 행정처 심의관에게 유 의원 재판과 관련한 대응 문건을 작성하도록 한 후 해당 메일을 유 의원의 변호인에게 이메일로 전달한 사실을 확인했다.⁶⁵⁾

아) 박근혜 전 대통령 비선진료 관련자인 박채운 특허소송 재판 거래 의혹

검찰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비선진료를 담당했던 김영재 원장의 부인 박채운의 특허소송과 관련하여 변호사를 추천해달라고 직접 지시한 정황을 확인했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은 2016. 2. 초 박병대에게 전화해 “대통령 관심사건이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챙겨봐달라”고 요청하였고, 이후 임종헌의 요청을 받은 유해용은 해당 사건 담당 재판연구관을 시켜 박채운의 특허소송 상고심 사건 진행경과와 처리 계획을 담은 문건을 작성하게 하였으며, 이를 임종헌에게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⁶⁶⁾ 박채운은 실제 특허법원과 대법원에서 모두 승소했다.

자) 법원행정처 비자금 조성 의혹

법원행정처 예산으로 수억 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한 사실이 검찰 수사 과정에서 확인되었다(2018. 9. 4.). 법원행정처는 이를 고위법관을 위한 격려금 및 대외활동비로 사용하였다고 답했다.⁶⁷⁾ 검찰은 대법원 예산·재무담당관실의 압수수색을 통해 당시 법원행정처가 각급 법원장에게 수 천 만원에 이르는 현금 다발을 지급한 것을 확인했다. 검찰은 일선 법원장 등이 자유롭게 쓸 수 있는 현금을 받아 상고법원 로비용으로 사용한 것이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고 밝혔다.⁶⁸⁾

차) 수사기밀 유출 의혹

검찰은 법원행정처 심의관을 지낸 나상훈 부장판사가 서울서부지법 기획법관으로 근무하던 2016년, 서울서부지검이 수사한 법원 집행관 비리사건의 수사기밀을

65) 2018. 10. 24. <SBS> “‘특허청장 혼내 달라’ 청탁...성공하자 재판전략 지원” ;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4986918&plink=ORI&cooper=NAVER ; 2018. 11. 7. 최종 방문
 66) 2018. 9. 20. <한겨레> “우병우, 박병대에 “박근혜 관심사건 챙겨봐달라” 요청” ;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63019.html ; 2018. 11. 7. 최종 방문
 67) 2018. 9. 6. <연합뉴스TV> “법원행정처, ‘비자금 의혹’ 일부 시인...불법 의도는 부인” ; <http://www.yonhapnewstv.co.kr/MYH20180906001800038/?did=1825m> ; 2018. 11. 7. 최종 방문
 68) 2018. 9. 4. <뉴스시스> “상금 주듯...‘양승태 비자금’ 법원장 회의 소집해 뿌렸다” ;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80904_0000409418&cID=10201&pID=10200 ; 2018. 11. 7. 최종 방문

임종헌에게 유출한 정황도 파악했다.⁶⁹⁾ 집행관 비리 수사가 전국 법관으로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해 법원행정처가 조직적으로 수사정보를 들여다 본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수석부장을 지낸 신광렬, 임성근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등 법관 5명 또한 수사기밀 누설 의혹과 관련하여 수사를 받았다. 신광렬, 임성근 판사는 ‘정운호 게이트’ 관련 영장수사정보를 전달한 것으로 파악되었다.⁷⁰⁾

카) 박근혜 전 대통령 법률자문 의혹

검찰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 당시(2016. 11.경), 임종헌이 청와대 법무비서관실의 부탁을 받아 법원행정처 및 재판연구관실 판사들에게 ‘VIP관련 직권남용 등 법리모음’이라는 제목의 문건을 작성하도록 한 사실을 확인했다.⁷¹⁾

타) 이석기 내란음모 상고심 재판개입 의혹

검찰은 상고법원 도입이 적극 추진되던 2015. 1. 18.,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이 ‘최민호 판사 관련 대응 방안’에 대한 문건을 작성한 사실을 확인했다. 현직 판사가 거물 사채업자로부터 수억 원의 뇌물을 수수한 사실을 검찰에서 자백하자 법원행정처는 해당 문건을 작성하여 이를 덮기 위하여 ‘대법원에 계류 중인 이석기 의원 사건을 1월 22일에 선고’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⁷²⁾ 실제 그 다음날인 2015. 1. 19. 대법원은 출입기자단에 2015. 1. 22. 이석기 사건을 선고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선고 이후인 2015. 1. 25. 법원행정처는 ‘대응전략 주효해 사건 수습 국면’이라고 적힌 후속 문건을 작성했다.⁷³⁾ 법원에 불리한 의혹을 덮기 위하여 재판 선고 기일을 조정하는 등 재판 진행에 개입하였다고 의심할 수 있는 정황들이다.

파) 쌍용자동차 대한문 집회 공무집행방해 사건 재판개입 의혹

사법농단 수사 과정에서 검찰은 임성근 서울고법 부장판사(당시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수석부장판사)가 쌍용자동차 대한문 집회에 참석하였다가 기소된 민변 변호사들의 재판에 개입한 정황을 파악하였다. 임성근 부장판사는 “과격하 표현 때문에 언론이나 변호사 단체에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며 재판부에 판결문 수정을 지

69) 2018. 8. 29. <민중의 소리> “검찰, ‘양승태 행정처에 수사기밀 유출’ 현직 부장판사 피의자 소환” ; <http://www.vop.co.kr/A00001326139.html> ; 2018. 11. 7. 최종 방문

70) 2018. 9. 2. <연합뉴스> “행정처 판사들, 일선법원 옮겨서도 ‘사법농단’ 거점역할 정황” ;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9/01/0200000000AKR20180901030900004.HTML?input=1195m> ; 2018. 11. 7. 최종 방문

71) 2018. 10. 5. <노컷뉴스> “양승태 법원행정처, 최순실 구속 후 ‘朴 법률 자문’ 정황” ; <http://www.nocutnews.co.kr/news/5040589> ; 2018. 11. 7. 최종 방문

72) 2018. 8. 3. <오마이뉴스> “‘이석기 재판’ 앞당긴 대법원, 행정처가 시기 좌우했다” ;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460340&CMPT_CD=P0010&utm_source=naver&utm_medium=newsearch&utm_campaign=naver_news ; 2018. 11. 7. 최종 방문

73) 2018. 8. 3. <동아일보> “‘日 강제징용 재판거래 의혹’ 외교부 압수수색” ; <http://news.donga.com/3/all/20180802/91358858/1> ; 2018. 11. 7. 최종 방문

시하는 방식으로 재판에 개입한 정황이 확인되었다.⁷⁴⁾

하) 형사사건 성공보수 약정 무효판결 관련

검찰은 임종헌 USB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형사사건 성공보수 규제 도입 검토’라는 제목의 문건을 확보하였다. 이 문건은 형사사건 성공보수 규제 도입 가능성 및 추진 전략 등을 다각도로 검토한 내용을 담고 있었는데⁷⁵⁾, 이를 두고 대법원이 대한변협을 압박하기 위하여 재판에 개입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다.

다.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구속, 그 이후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8. 10. 27. 사법농단 사태의 핵심적 관여자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였다. 이는 사법농단 관련 수사가 개시된 이후 관련자에 대하여 처음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사례이다. 위 구속영장 발부 이후, 고위 법관을 중심으로 검찰 사법농단 수사의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이어지고 있다. 2018. 10. 16. 법원 내부게시판에 사법농단 관련 법관을 대상으로 한 ‘밤샘수사’를 비판하는 글이 게시되었고(강민구 서울고법 부장판사 작성), 최인석 울산지방법원장, 김시철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이 검찰 수사에 대한 비판을 담은 글을 코트넷에 올린 사실이 확인되었다.⁷⁶⁾

임종헌 전 차장의 구속에 따라 사법농단과 관련된 검찰의 수사 속도는 한층 더 빨라질 것이며, 임종헌에 대한 기소 또한 머지않아 이루어지리라 예상된다. 다만 전체 관여자들에 대한 수사 및 기소, 재판절차 등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며, 현재 국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특별재판부 및 탄핵에 대한 논의 또한 그 진전에 난항이 있는 상태이다.

Ⅲ. 사법농단 사태에 대한 민변 및 시민사회의 대응

민변은 특별조사단이 구성되기 이전부터, 법원 내의 조사 기구에 조사의 투명성과 철저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객관적 외부인사의 참가를 보장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해 왔다.⁷⁷⁾ 그러나 대법원은 단 한명의 외부 인사 없이, 법원행정처장을 포함하여 법관 6명⁷⁸⁾으로 위 특별조사단

74) 2018. 10. 22. <경향신문> “‘쌍용차 재판개입’ 임성근 부장판사, “판결문 과격·양형 문구 빼라” 지시”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810220600035&code=940301 ; 2018. 11. 7. 최종 방문

75) 2018. 7. 26. <파이낸셜 뉴스> “檢, 양승태 사법부 ‘형사사건 성공보수 무효판결’ 기획 정황 임종헌 USB서 확인” ; <http://www.fnnews.com/news/201807261433024676> ; 2018. 11. 7. 최종 방문

76) 2018. 10. 31. <경향신문> “고위 법관들, 임종헌 구속되자 ‘수사 흠집내기’”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810311726001&code=940301 ; 2018. 11. 7. 최종 방문

77) 2018. 1. 31.자 민변 성명, “법관블랙리스트 진상규명 촉구를 위한 민변의 성명 - 이번이 마지막이다. 추가 조사 철저히 실시하라”

78) 안철상 법원행정처장(대법관, 특별조사단 단장), 노태약 서울북부지방법원장, 김흥준 법원행정처 윤리 감사관, 이성복 전국법관대표회의 당시 의장, 정재현 전산정보관리국장, 구태희 사법연수원 교수

을 구성하였고, 2018. 5. 25. 저녁 무렵 조사보고서를 발표하였다.

민변은 위 조사보고서가 발표되자마자 이를 입수하여 검토한 후, 2018. 5. 28. 검찰의 철저한 수사, 사법부의 수사 협조 및 재발방지대책 수립, 특별조사단이 조사 대상으로 삼은 문건 전체의 공개를 요구하는 논평을 발표하였다.⁷⁹⁾

위 조사보고서 발표 직후, 민변은 2018. 5. 29. 재판거래 의혹의 피해자 및 관련 사건을 담당하였던 대리인/변호인들과 함께 간담회를 진행하였다. 위 간담회에서 피해당사자들 및 관련 사건을 진행해 온 회원들의 의견 등을 종합한 결과, 위 조사보고서에서 드러난 추가 내용들을 포함하여 사법농단 사태의 책임 법관 등을 추가로 고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에 민변 및 여러 시민사회단체, 그리고 사법농단 사태의 피해자단위는 공동으로 2018. 5. 30. 대법원 동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였고, 이어 2018. 6. 5.에는 위 추가고발장을 별도의 기자회견과 함께 제출하였다. 나아가 민변과 참여연대는 2018. 6. 7. 공동으로 'UN 법관 및 변호사의 독립성에 관한 특별보고관' 디에고 가시아 사얀⁸⁰⁾에게 진정서(Letter of Allegation)를 제출하여, 국제사회에 사법농단 사태에 대한 관심과 대응을 촉구하기도 하였다.



[2018. 6. 7. 진정서 제출 기자회견⁸¹⁾

“대법원 사법농단 규탄 법률가”들은 2018. 6. 5. 대법원 동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진 뒤, 곧바로 대법원 동문 앞에 천막을 설치하고 24시간 농성에 들어갔다. 유래 없는 법률가들의 대법원 앞 천막 농성은 2018. 6. 18.까지 14일간 계속되었다. 또한 전국 14개 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들은 2018. 6. 11. 서울지방변호사회관 앞에 모여 집회를 갖고, 2000여명의 변호사 명의로 시국선언을 발표하였으며, 집회에 참석한 변호사들은 대법원 앞까지 가두 행진을 진행

79) 2018. 5. 25.자 민변 논평, “사법행정권 남용을 엄중히 처벌하라. - 특별조사단 조사 결과에 부처” ; 이 논평은 31차 집행부 명의로 발표된 최초의 논평이다.

80) Mr. Diego García-Sayán, Special Rapporteur on the independence of judges and lawyers
81)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6/07/0200000000AKR20180607110600004.HTML?input=1195m> ; 2018. 10. 30. 최종방문, 사진은 연합뉴스

하기도 하였다.



[2018. 6. 11. 전국변호사 시국선언 후 가두행진]

한편 민변은 2018. 6. 4. 제1차 집행위원회에서 사법농단 사태에 신속하고 철저한 대응을 위해 별도의 단위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이를 위하여 “사법농단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T/F”(이하 TF)를 구성하기로 결의하였다. TF에는 천낙봉 부회장(단장)을 비롯하여 약 40여명의 회원이 참여하였으며, 10월 말까지 총 17회의 회의를 개최하였다.

TF에서는 가장 우선적으로 사법농단 사안을 법률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외화하는 것이 가장 필요하다고 보고, 우선 각 사안별로 이슈페이퍼를 발간하기로 하였다. 이슈페이퍼는 현재까지 총 16편이 발간⁸²⁾되었다. 또한 TF는 이슈페이퍼를 요약하여 9편의 대시민용 카드 뉴스를 발간⁸³⁾하기도 하였다.

82) TF가 발간한 이슈페이퍼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

- ① 상고법원을 매개로 한 재판거래, 재판개입 / 2018. 6. 26.(화)
- ② 국제인권법연구회·인권과 사법제도 소모임의 동향 파악 및 학술대회 개입 / 2018. 6. 28.(목)
- ③ 사법행정위원회 위원 추천 및 서울중앙지방법원 단독판사회의 의장 선거개입 등 / 2018. 7. 3.(화)
- ④ 익명 인터넷 카페(‘이사야’) 동향 파악 및 법관 성향 · 동향 파악 / 2018. 7. 4. (수)
- ⑤ 원세훈 전 국정원장 사건 재판거래 의혹 / 2018. 7. 5.(목)
- ⑥ 전교조 범외노조 사건 재판거래 의혹 / 2018. 7. 9.(월)
- ⑦ 사법농단 사태 관련 증거인멸 및 공용서류무효 혐의에 대하여 / 2018. 7. 10.(화)
- ⑧ 통상임금 전원합의체 판결 재판거래 의혹 / 2018. 7. 16.(월)
- ⑨ 긴급조치 등 과거사 사건 재판거래 의혹 / 2018. 7. 18.(수)
- ⑩ 철도노조 파업 · KTX 승무원 재판거래 의혹 / 2018. 7. 20.(금)
- ⑪ 쌍용자동차·콜텍 정리해고, 발레오만도 조직형태 변경 사건 재판거래 의혹 / 2018. 7. 24.(화)
- ⑫ 국립대학교 기성회비 사건 재판거래 의혹 / 2018. 7. 25.(수)
- ⑬ 전교조 시국선언·김형근 교사 사건 재판거래 의혹 / 2018. 7. 26.(목)
- ⑭ 키코 사건 재판거래 의혹 / 2018. 7. 31.(화)
- ⑮ 강제동원 피해 손해배상청구 사건 재판거래 의혹 / 2018. 8. 2.(목)
- ⑯ 서기호 전 판사 연임거부처분 취소소송 재판개입 / 2018. 9. 13.(목)

[사법농단 ISSUE PAPER 8]

강제등원 피해 손해배상청구 사건 재판거래 의혹

2018. 8. 2. (목)

MINBYUN-Lawyers for a Democratic Society
민주시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농단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T/F

| |
|---|
| 4. 구제적 압축·실독 방안 |
| ▶ 대상자별 상황과 관심사, 정치적 입장, 특보단 회의에서의 역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개인별 맞춤형 압축·실독 방안 수립 |
| ▶ 이병기 비서실장 (중략) |
| ▶ (HOW) 상고제도 개선의 필요성·시급성 등 강조 (중략) |
| - 주요 관심사항 관련 원론적 차원에서 법원의 합조 노력 또는 공감 의사 파악 |
| 원 피해 반성사 → 원일 우호관계의 복원 (중략) |
| ▶ 산케이 신문 서울지국장 사건의 외교적 해원 노력 중 → 출국정지기간 연장처분 집행장시달 사건과 협조상에 대하여 4. 15까지 결정 보류 요청 |
| ▶ 인정경제신문 피해자 손해배상청구사건(대법원 20013다161381, 2013다67587)에 대하여 장기기차위지의 과기관송관련 기대할 것으로 예상 (중략) |
| 원 원석훈 사건 |
| ▶ 적어도 권원합의제의 판단 등을 기대하는 것으로 보임 |

3. 특조단 조사보고서 내용

가. 조사내용의 기재

특조단은, 「기타 재판의 독립을 침해하거나 훼손한 의혹」 중 하나로 '상고법원 관련 BH 대응전략'[79, 330]을 검토하면서, 시진국 심의관이 임종현 기조실장의 지시를 받아 2015. 3. 26. 위 문건을 작성하였다고 밝혔다(조사보고서 168쪽).

'상고법원 관련 BH 대응전략'[79, 330]이 작성된 배경에는 '상고법원 도입에 대한 최종 정책결정은 대통령의 몫이므로 청와대의 입법 협조 획득이 절대적이라는 인식하에 사법부의 공식적 청와대 접촉장구는 민정수석실이

- 6 -

[2018. 8. 2. 발간, 이슈페이퍼 15호 표지 및 본문]

TF는 이슈페이퍼 작성 이외에도 피해자 구제 및 재판절차의 특례를 규정하는 특별법 제정 문제, 사법농단 사태에 책임 있는 법관들에 대한 탄핵 문제에 대해서도 TF 내 관련 분과를 만들어 대응해 나가기 시작하였으며, 이는 이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박주민 의원의 입법 및 사법농단 시국회의 차원의 법관 탄핵안으로 발전하였다.

TF는 수사 진행 과정에서도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였다. TF가 2018. 7. 5. 발표한 <사법농단 수사 10대 과제>는 당시 수사 주요 과제들을 선별한 것으로, 검찰의 수사 진행 방향에 대해 적시에 시민사회의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평가받았다. 또한 TF에서는 사법농단 관련 고발대리인인 회원들을 중심으로 2018. 9. 12. 검찰측과 면담을 진행하여, 검찰의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요구하기도 하였다.

이후 검찰은 수사에 착수한지 한 달여 만인 2018. 7. 21. 강제수사에 돌입하였으나, 이 과정에서 법원이 검찰이 청구한 대부분의 압수수색영장을 기각하였음이 확인되었다. 뒤이어 2018. 7. 31. 법원행정처는 특별조사단의 조사대상 문건 일부를 추가로 공개하였는데, 추가로 공개된 문건들에서도 충격적인 사법농단의 실태가 재차 확인되었다. 이에 민변은 2018. 8. 13. 영장 기각의 문제점과 수사의 올바른 방향, 그리고 법원행정처의 추가 공개 문건 등의 검토 결과를 함께 논의하기 위하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참여연대, 박주

83) TF가 발간한 카드뉴스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

- ① 이게 법원이나 / 2018. 6. 14. (목)
- ② KTX 사건에 물타지 마라 2018. 6. 21. (목)
- ③ 재판거래 의혹의 중심 '상고법원' / 2018. 6. 29. (금)
- ④ 사법행정권을 제자리로! / 2018. 6. 29. (금)
- ⑤ 판사가 판사를 사찰한다? / 2018. 7. 4. (수)
- ⑥ 검찰수사, 지켜보고 있다 / 2018. 7. 9.(월)
- ⑦ 판결보다 중요한 사법부의 진의 / 2018. 7. 11.(수)
- ⑧ 대법원의 증거인멸 / 2017. 7. 17.(화)
- ⑨ 통상임금 판결의 진실 / 2018. 7. 25. (수)

민·박지원·송기현·채이배 의원실과 함께 공동으로 “사법농단 실태 톺아보기”라는 긴급토론회를 주최하였다.



[2018. 8. 13. 사법농단 실태 톺아보기 토론회]⁸⁴⁾

이후에도 법원의 형평성 잃은 압수수색영장 기각이 계속되자, TF를 중심으로 압수수색 영장 기각의 부당성을 알리는 1인 시위를 시작하게 되었다. 2018. 8. 30.부터 2018. 10. 31.까지 2개월간에 걸쳐 진행된 1인 시위는, 총 39일에 걸쳐 아침 1곳(9시부터 10시까지 서울법원종합청사 동문)과 점심 2곳(11시 30분부터 13시까지)에서 계속되었다.



[2018. 8. 31. 서울법원종합청사 동문 앞에서 1인 시위 중인 김호철 회장]

84) <https://news.naver.com/main/read.nhn?oid=001&aid=0010267264> ; 2018. 11. 8. 최종방문, 사진은 연합뉴스

민변의 위와 같은 활동은 여러 시민사회와 함께 결합하면서 더욱 체계화되었다. 민변과 민주노총, 416연대, 한국진보연대, 참여연대, 민주법연의 각 대표가 제안한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토론회”가 2018. 6. 21. 열렸으며, 토론 후 참가단위 전체 회의를 통해 공동으로 사법농단 시국회의를 꾸려나가기로 결의하였다. 이후 사법농단 시국회의는 세 차례의 대규모 시국회의⁸⁵⁾ 및 다수의 현장 집회를 주최하였으며, 집행단체 간 유기적 소통을 통해 사법농단 사태를 효율적이고 분명하게 대응하기 위한 시민사회의 허브로 기능하고 있다.

7월 중순을 넘어서면서 사법농단 사태와 관련된 특별법의 입법이 논의되기 시작하였다. TF에서는 특별재판부의 설치를 포함한 형사절차의 특례법 및 재심절차의 확대 등을 포함한 피해자의 구제관련 특례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가지고, 박주민 의원실과 함께 두 건의 특별법에 대한 조문화 작업에 착수하였다. 이후 위 두 건의 특별법은 2018. 7. 30. 국회 공청회를 거쳐, 2018. 8. 14. 박주민 의원이 대표발의⁸⁶⁾하였다.

사법농단 관여 법관에 대한 탄핵도 2018. 9. 27. 토론회⁸⁷⁾를 통해 국회에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되었다. 앞서 언급한 대로 TF에서는 이미 7월부터 사법농단 관여 법관들에 대한 탄핵안을 준비하고 있었고, 이를 정리한 후 시민사회와의 논의 끝에 2018. 10. 30. 국회 정론관에서 권순일 대법관·김민수 판사·박상언 판사·이규진 판사·이민걸 판사·정다주 판사 총 6명의 법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공개하고 제 정당에 탄핵안 발의를 촉구하는, 사법농단 시국회의 주최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2018. 10. 30. 탄핵소추안 공개제안 기자회견]⁸⁸⁾

85) 제1차 시국회의 : 2018. 6. 28. /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 제2차 시국회의 : 2018. 8. 23. / 참여연대 아름드리홀 ; 제3차 시국회의 : 2018. 10. 11. / 광화문 프레스센터

86)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기간 중의 사법농단 의혹사건 재판을 위한 특별형사절차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014890),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기간 중의 사법농단 의혹사건 피해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014894)

87) <법관에게 책임을 묻는다 - 사법농단 관여 법관 탄핵의 의의와 필요성> 토론회, 사법농단 시국회의 주관, 민변·참여연대·민주주의법학연구회·박주민의원실·채이배의원실·천정배의원실·박지원의의원실·심상정의원실·윤소하의원실·이정미의원실·김종훈의원실 공동주최, 2018. 9. 27.,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88)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810300955011&code=910100 ; 2018. 10. 31. 최종방문, 사진은 경향신문

9월에 접어들면서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가 대법원장에게 건의한 법원행정처 개혁 방안의 구체화가 현실적인 문제로 대두되었다. 당시 시민사회에서는 사법부의 ‘셀프 개혁’을 통해서 진정한 의미의 법원행정처 개혁, 나아가 법원 개혁은 요원하다는 공통된 견해를 가지고 있었다. 이에 사법농단 시국회의를 중심으로, 셀프 개혁의 부당성을 알리는 기자회견⁸⁹⁾ 및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결국 사법부는 이러한 시민사회의 요구를 받아들여, 별도의 추진단을 구성하게 되었다.

사법농단 시국회의는 사법농단 사태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의사를 받아 안고, 3535명 명의의 전면 신문 광고를 제작하여 2018. 9. 18. 한겨레신문 15쪽에 게재하였다.



[2018. 9. 18.자 한겨레신문 15쪽, 전면 광고]

또한 사법농단 시국회의는 특별재판부 설치 및 피해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제정과 사법농단 관여 법관 탄핵을 요구하는 시민 엽서쓰기 운동을 시작하였으며, 취합된 6,550장의 엽서를 2018. 11. 6. 국회의장에게 전달하였다.

89) <참담한 “사법부 70년” 사법적폐 청산하라> 기자회견, 사법농단 시국회의 주최, 2018. 9. 13., 대법원 정문 앞



[시민엽서쓰기 운동]

IV. 남겨진 과제들⁹⁰⁾

이 글을 마무리하며, 우리가 역사적으로 가져 왔던 사법개혁의 리스트를 되짚어 보고자 한다. 유래 없이 강력한 검찰권을 견제하기 위해, 검찰개혁의 여러 주제들이 오랜 기간 사법개혁 리스트의 첫머리를 차지해 왔다. 그 과정에서 법원은 개혁의 객체라기보다 개혁의 조력자로 인식되기도 하였고, 나아가 법원개혁의 과제들은 곧잘 잊히기도 하였다. 아이러니하게도, 사법농단 사태는 우리가 지금까지 유지해 왔던 사법개혁의 리스트를 점검할 기회를 주었다. 이하에서는 몇 가지 시급한 사법부의 개혁 과제들에 대해 검토해 본다.

1. 법원행정처 폐지

이번 사법농단 사태의 진원지에 대해 이견을 제시하기란 쉽지 않다. 법원행정처는 과거부터 이른바 엘리트 코스로 불렸으며, 법관들에게는 ‘승진을 위한 통로’로 인식되어 왔다. 정기인사 이동 시기 법관들에게 법원행정처는 희망근무지로 쓸 수도 없는 곳이자, 누군가 불러 주어야 갈 수 있는 곳이었다. 법원행정처에 부름받기 위해 각급 법원의 공보담당판사가 되려고 노력해야 했고, 법원행정처의 심의관을 마치고는 그 경력을 자양분으로 삼아 고등법원 부장판사가 되어야 했으며, 다시 인사권자에게 발탁되어 법원행정처 차장, 실장 등 요직을 거쳐야 대법관이 될 수 있다는 신화가 있었다. 이러한 신화는 아테네의 아크로폴리스가 아닌 법관들의 뇌리 속에 깊이 뿌리내렸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지상목표였던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당시 법원행정처는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기획했고, 그 중 다수를 실행에 옮겼다. 이 과정에서 법원행정처 소속 법관들은 이른바 ‘법복 입은 관료’로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 사법행정권을

90) “IV. 남겨진 과제들”, “V.나가며”의 글 중 상당 부분은 다음의 글을 전재(轉載)한 것임을 밝혀둔다.
 ; 최용근, 2018. 10. 30., “사법 신뢰 회복을 위해 시급한 법원개혁과제”, 사법농단 해결을 위한 특별 판사도입 긴급토론회(민주연구원·국회의원 박주민·국회의원 박범계 공동주최) 발표문

행사하지 아니하고, 조직적 목표를 향한 정세 판단에 기초하여 상급자의 명시적/묵시적 지시에 따라 사법행정권을 남용하였다. 이 과정에서 희생된 것은, 국민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재판의 독립 원칙, 공무원의 공익실현의무 등 대단히 목직한 헌법적 가치들이다.

사법부 관료화의 폐해가 사법농단이라는 극단의 모습으로 드러난 지금의 상황을 고려하면, 사법부 관료화의 핵심적 역할을 하는 법원행정처는 반드시 폐지되어야 한다. 법원행정처 폐지는 법원행정처의 단순한 개명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며, 재판과 사법행정의 엄격한 인적·물적 분리를 전제하는 것이다.

최근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는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사법행정에 관한 집행기관으로 ‘법원사무처’를 두며, 법원사무처에는 상근법관을 두지 않도록 하는 안을 대법원장에게 건의한바 있는데, 이러한 방향은 바람직하다고 평가된다. 나아가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에서는 법원행정처의 폐지와 함께 사법행정에 관한 총괄기구로 ‘(가칭) 사법행정회의’를 설치하며, 대법원장을 의장으로 하고, 외부인사 및 법관을 대법원장이 위원으로 임명하도록 하는 안을 대법원장에게 건의한바 있다. 위 안은 현재 별도의 추진단에서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바, 사법행정회의에 현직 법관이 임용될 경우 적어도 당해 법관은 더 이상 재판 업무를 하지 않은 채 사법행정업무에만 종사하거나 퇴직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2. 고등법원 부장판사 폐지 및 법관인사이원화 정착

법원행정처가 사법부 관료화의 물적 토대라면, 고등법원 부장판사 직위는 사법부 관료화의 인적 중심요소라 할 수 있다. 지금까지 법관들은 고등법원 부장판사로의 승진을 법원장 및 대법관 등 고위법관으로 가는 통로로 인식하였으며, 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승진하지 못한 경우에는 조기 사직하는 사례도 적지 않았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용훈 대법원장은 고등법원 부장판사제도의 폐지 및 고등법원과 지방법원의 인사 이원화를 시작하였으나, 후임 양승태 대법원장은 위 두 제도의 시행을 사실상 폐지하여 사법부의 관료화를 더욱 심화시켰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전임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형해화되었던 법관인사이원화 제도를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며, 사법연수원 25기부터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제도를 폐지하겠다고도 밝혔다. 나아가 올해 8월에는 서울고등법원 고법판사를 광주고등법원 고법판사로 전보하면서 동시에 서울고법 부장판사 직무대리를 명하는 인사를 하기도 하였는바, 이는 현행 법원조직법 제27조와의 관계 등을 감안하되 법관인사이원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대법원장의 의사가 반영된 것으로 이해된다. 이와 관련하여 국회는 법원조직법 개정 등 입법을 통해 고등법원 부장판사 제도 폐지 및 법관인사이원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할 필요가 있다.

법관인사이원화와 함께 대법원의 재판연구관 제도 또한 살펴볼 필요가 있다. 현재 일부 분야(공정거래, 헌법, 영미법, 지적재산권, 조세법 등 특수한 영역)의 재판연구관과 극소수의 ‘청년 재판연구관’을 제외하고는 10년 이상의 법조경력을 가진 중견 법관들이 대법관을 도와 상고심 사건의 심리 및 재판에 관한 조사·연구를 담당하는 재판연구관으로 근무하고 있다. 이번 사법농단 사태의 경과에 있어 법관인 재판연구관과 법원행정처 심의관 사이에 재판 관련 보고서를 주고받거나 협의하는 등의 사례가 다수 관찰되었는바, 이러한 폐단을 미연에 방지하고 사실심을 더욱 강화하기 위하여 법관 재판연구관을 일선 법원에 배치하고 대법원의 재판연구

관을 비법관으로 임명하는 방안 또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3. 상고심 제도 개선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기 법원행정처는 상고법원 도입을 강력하게 추진했다. 상고법원은 상고심 제도 개선의 한 대안으로서 법원 내부로부터 대두되었으나, 헌법상 최고법원인 대법원으로부터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대법원으로서의 특별상고 제도에 의하여 사실상 4심제로 운영될 가능성 등 비판에 직면하였고, 특히 상고법원 법관직을 매개로 더욱 사법부 내의 서열화·관료화가 심화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상고심 제도 개선의 필요성 그 자체에 대하여는 누구도 이견을 제시하기 어렵다. 상고심 사건은 매년 폭증하고 있으며, 60-70%의 민사·특별 상고심 사건이 심리불속행결정으로 정리되고 있음에도, 소부 합의는 판결문 초안의 제시도 없이 주심 대법관에 의지하여 불과 수 분만에 이루어지고, 전원합의체 판결도 한 사건에 불과 수십 분 정도의 토론 밖에 할 수 없는 것이, 현재 대법원 상고심 처리의 현실이다.⁹¹⁾

상고심 제도의 바람직한 개선방안으로 대폭적인 대법관의 증원이 필요하다고 본다. 대법관의 증원은 대법관 구성의 다양화로 연결되어 자연스럽게 다양한 가치와 이념이 상고심 재판에 현출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상고심의 권리구제기능도 보다 강화시킬 수 있다. 대법관 증원론에 대하여 판결의 통일성 저해 및 대법원 전원합의체 구성의 어려움 등을 근거로 반론을 제기하는 견해가 있으나, 100명이 훨씬 넘는 최고법원 판사로 구성된 독일의 연방일반법원이나 프랑스의 파기원이 원활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에서 확인할 수 있듯, 위와 같은 우려는 기우에 불과하다. 현재 13명이 구성하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또한 일정 시간의 토론 후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 대법관의 서열 역순에 따라 개별 쟁점에 대한 의사를 표시하는 방식으로 다수의견을 수렴하고 있는바, 전원합의체를 구성하는 대법관의 수가 많아지더라도 현재와 같은 방식을 유지하는 데 어려움이 없다고 본다. 만약 정히 증원된 대법관의 숫자가 너무 많아 도저히 기존의 방식과 같이 전원합의체를 구성하기 어렵게 된다면, 법원조직법을 개정하여 대법원장과 각 소부별 구성원 중 일부(가령 1명)만으로 전원합의체를 구성하는 방안도 고민해 볼 수 있다.

4. 사실심의 충실화

상고심 제도 개선 요구의 이면에는 사실심에 대한 불신이 깊게 자리하고 있다. 5분 재판, 막힌 재판, 조서(서면) 재판 등 현재 사실심의 재판 관행을 비유하는 표현들은 하나같이 국민적 신뢰와 거리가 멀다.

사실심의 충실화는 불필요한 상소를 줄여 궁극적으로 상고심 제도 운영의 정상화에도 기여하는바 크다. 나아가 시민들의 입장에서 사실심의 충실화는 불필요한 추가 비용의 부담 없이 재판 결과에 조기 승복하고 하루 빨리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한다.

이러한 사실심 충실화의 방안으로 첫 손에 꼽히는 것은 사실심 법관의 대폭 증원이다. 변호사들로서는 증거신청을 제대로 받아주지 않는 재판부를 만나 곤혹스러웠던 경험이 한 번쯤은 있을 것이다. 1심에서는 항소심에 가서 증거 신청을 하라고 떠밀고, 항소심에서는 왜 1심에서

91) 보다 자세한 내용에 대하여는 박시환, “대법원 상고사건 처리의 실제 모습과 문제점”, 민주법학 제 62호, 민주주의법학연구회, 2016. 참조

증거를 신청하지 않았느냐며 면박당한 경험도 적지 않을 것이다. 변호사들은 이러한 경험을 통해 사실심이 부실하다는 생각을 갖게 되고, 자연스레 의뢰인에게 상소를 권하게도 된다. 반면 일선 법관들은 충실하게 사실심을 심리하려 해도 감당하기 어려운 재판 숫자 때문에, 불가피하게 '신속한' 재판을 할 수 밖에 없다고 한다. 또한 사건처리율, 장기미제율 등 평가 요소로서의 '통계'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고도 한다. 결국 이러한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일선 법관들의 대폭 충원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한다. 사실심 법관의 증원을 전제로, 소액사건의 판결 이유 기재도 사실심 충실화에 필수적인 요소라 생각한다.

사실인정은 결국 구체적 증거에 의하여야 함에도, 증거의 구조적 편재 등을 이유로 사실상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고, 결국 그 재판 결과도 실제적 진실을 반영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 등을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는 피해자의 증거확보 강화 방안 등을 참조하여, 소송당사자에게 특정한 경우 자료제출요구권 및 자료제출의무 등을 부여하고, 문서제출명령결정의 불이행 제재를 강화하며, 공공기관에 대한 사실조회촉탁결정의 규범력을 강화하는 등의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위자료 기준 및 양형 기준 등 사실심 법관의 재량이라고 여겨졌던 분야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제시하고, 특수 분야의 전문심리위원을 적극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내년부터 서울·대전·대구·광주·부산지방법원이 시범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밝힌 지방법원 부장판사급 '경력대등재판부'의 구성과 운영도 사실심 충실화의 측면에서 주목되는 조치이다.

5. 국민의 사법참여 확대

국민적 사법 불신은 국민적 사법 참여로 극복할 수 있다. 현재 국민의 사법참여는 국민참여 재판에서 배심원로의 참여 등 매우 제한되어 있고, 판결문을 포함한 주요 사법 정보의 접근도 차단되어 있다.

국민의 사법 접근 및 참여를 위해, 무엇보다 판결문의 전수 공개가 추진되어야 한다. 현재 법관들은 내부전산망을 통해 각급 법원의 판결문을 특별한 제한 없이 접근할 수 있다. 그러나 일반 국민들은 하급심 판결을 참조하려 할 때 사건 번호를 알고 있는 경우 판결문교부신청을 하는 방법, 개별 법원의 홈페이지에 각각 접속하여 당해 법원의 판결문만을 대상으로 검색하는 방법 이외에는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등 인터넷 등에 등재된 아주 소수의 하급심 판결을 참조하는 수밖에 없다. 이러한 정보의 격차는 시민에 의한 사법부의 통제를 더욱 어렵게 만드는 요소로 작동하게 된다. 사법부는 개인정보 유출 등의 문제를 제기하며 판결문 전수 공개에 난색을 표하고 있으나, 이는 얼마든지 익명화 등의 기술적 방법으로 타개할 수 있다.

이미 도입 이래로 10년이 지난 국민참여재판제도에 대해서도 국민의 사법참여 확대의 측면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 관료사법이 국민들로부터 불신 받는 현실에서 일반 국민의 다양한 가치관과 건전한 상식을 사법에 반영하여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과 투명성 확보를 목적으로 도입된 것이 국민참여재판제도라는 점을 상기할 때, 대상사건의 확대 및 배심원 수의 증가, 배심원 평결에 대한 법관의 관여 축소, 적어도 배심원이 인정한 사실 내지 만장일치로 평결한 내용에 대하여 최소한의 기속력을 인정하는 방안, 형사를 넘어 민사 재판의 사실인정에 대한 배심제도 확대 등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V. 나가며

재판의 독립은 보장되어야 한다. 법원 안팎을 가리지 않고 재판에 관여하려거나 개입하려는 그 어떤 시도도 좌절되어야 하며, 나아가 그러한 시도 자체조차 불가능한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재판은 오직 헌법과 법률, 그리고 법관의 양심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며, 이는 국민들에게 상세히 설명되어야 한다. 민주적 정당성을 갖추지 못한 사법부가 법률을 확장하여 해석하는 방향은 반드시 소수자를 보호하는 방향으로만 용인되어야 한다. 다수자의 의견은 이미 다수표를 얻은 정치세력이 다수당을 점한 입법부에서의 입법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되었을 것인바, 다수결이 보호하지 못하는 소수자의 기본적 인권을 마지막으로 확인하는 공간이 곧 사법부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법률해석의 원칙을 가지고 사법부가 독립하여 설 때, 그리고 이러한 사법부에 국민들의 접근과 참여가 보장될 때, 사법부는 비로소 국민주권주의를 실현하는 역할을 수행한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오늘 사법부의 현실은 참담하기 이를 데 없다. 재판의 독립은 사법부 스스로 방기하였고, 헌법도 법률도 법관의 양심도 아닌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의 의도와 책략에 따라 재판이 이루어진 사례가 다수 드러나고 있다. 법원행정처가 두 차례에 걸쳐 공개한 사법농단 관련 문건들을 하나하나 훑아본 현장의 시민들은, 더 이상 사법의 독립이 가능한 것인지조차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국민의 사법 불신이 더욱 깊어지기 전에, 법률가들이 국민적 사법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일선에 나서야 함은 이론의 여지가 없다. 국민의 사법 불신은, 법률가들로서는 “업의 본질”을 부정당하는 일이다. 국민의 사법에 대한 신뢰 없이 법관, 검사, 변호사, 법학자 등 그 어떤 법률가도 자신의 일을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고, 실제로 이를 영위해 나갈 수도 없다. 그것은 직역의 차이와 무관한, ‘법률가’들의 공통사항이다.

‘저주받으라’는 비법률가의 야유⁹²⁾를 뒤집어 쓴 채 그저 침묵할 수 없다면, 이제 법률가들은 무엇을 할 것인가. 사법농단 사태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피해 회복과 재발 방지를 위해, 나아가 사법의 신뢰 회복을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두서없는 이 글이 이러한 질문의 응답을 구하는 단초가 될 수 있다면, 미력한 필자들로서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

92) 프레드 로델(이승훈 옮김), “저주받으리라, 너희 법률가들이여!”, 2014, 후마니타스